

아동권리 컨퍼런스

아동권리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1일차 | 12. 08(목) 09:00~16:00



세이브더칠드런

CONTENTS

세션 1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

기조강연 11
징계권 삭제 후 양육 문화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발제 1 31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방향
: 영유아 사업을 중심으로

발제 2 51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 부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토론 67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

세션 2
아동학대의 현장

기조강연 103
아동학대 현황 및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발제 1 133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현장'의 현황과 지원 방향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만난 장애·비장애 아동

발제 2 149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장'의 현황과 지원 방향
: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만난 장애·비장애 아동

발제 3 157
[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아동 권리 교육]
: 장애·비장애 아동 콘텐츠 개발 배경 및 향후 계획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정태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한 후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37개국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프로텍트 어 제너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삶의 영향(Protect A Generation: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s lives)'이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전에는 8%였던 가정폭력 비율이 코로나19 이후에는 17%로 두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상황도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 돌봄 공백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작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가정 내 신고는 83.7%로 다른 해의 동일 기간보다 약 13% 증가하였습니다. 방임,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훨씬 더 넓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첨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교육 제도화, 학대 현장의 종사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중에서도 가장 고립된 그룹인 '장애아동'의 경우, '배리어프리(barrier-free)' 관점의 보편적 설계가 적용된 프로그램과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제도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2022 아동권리 컨퍼런스'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각지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나누는 만큼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 참여가 고려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힘써 주신 기초강연자, 발제자, 좌장 및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많은 분들에게 유의미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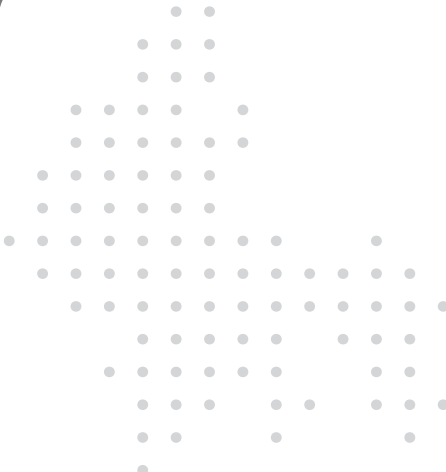
2022년 12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정 태 영



세션 1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



세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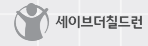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

기조강연

—
징계권 삭제 후
양육 문화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임영주 | 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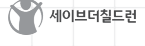
징계권 삭제 후 양육 문화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임영주 대표
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사고인가? 사건인가?





부모는 알고 싶다 긍정육아, 훈육

2022년 11월 22일(화)

수서
05:30

→

동대구
07:11

SRT 301 어른 | 특실



타는곳 출발 15분전 표출

3호차 | 3A

81309-1107-12051-48

[철도범죄신고 바로가기 >>](#)

타는곳은 열차 출발 15분 전 역사내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환불
승차권선물
여행변경

2022년 11월 24일(목)

수서
07:00

→

부산
09:23

SRT 307 어른 | 특실



타는곳 출발 15분전 표출

3호차 | 8C

81333-1107-11970-61

[철도범죄신고 바로가기 >>](#)

타는곳은 열차 출발 15분 전 역사내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환불
승차권선물
여행변경



민법? 징계권? 63년?

징계권 폐지?

사실조차 모르는 성인이 78%였다.

연합뉴스 2022.06.27. 네이버뉴스

징계권 폐지 1년반 지났지만... 성인 78% "체벌 금지된 사실 몰라"

세이브더칠드런, 성인 1천명 대상 설문... "체벌 인식 변화 더뎠다" "부모가 체벌없이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정보 습득 도와야" 아동학대 발미 논란을 일으켰던 민법 징...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징계권 폐지 1년 반 지났지만... 성인 78% "체벌 금지된 사실 몰라"





‘내 자식 내 맘대로?’, 잘못된 정서 바로잡자

‘아동 학대의 84%는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에 의해 일어난다’는 보도(조선일보 4월 10일자 사설)에 몸서리가 쳐진다. 그러나 어찌 보편이 수치는 놀랄 만한 게 아닐 것이다.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동시에 가장 많은 학대를 할 수 있으니까.

부모의 영향은 아이에게 절대적이다. 이번 칠곡사건의 피해 아동이며 사망 아동의 언니는 ‘계모·친아버지와 따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모가 동생을 죽였고 자신들을 학대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끝까지 사실을 숨겼을 것이다. 자녀가 비록 어려도 그들은 부모가 자신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해도 외부인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다. 사실을 말한 후에 돌아올 더 많은 학대와 바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입이 강한 아이들에게 버려짐은 ‘한재와 그레텔’을 연상시키고 숲 속 마녀에게 잡아먹힐 수 있다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다. 차라리 맞고 참으며 그

결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게 어린아이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가 얼마나 심각하고 많은지는 아이의 정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심각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에게도 ‘신데렐라법’이 필요하다. 계모(step-mother)라고 해서 모두 신데렐라의 새엄마 같은 사람은 아니다. 분명한 건 우리에게도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데렐라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여왕의 6월 국정연설에서도 이 법이 공식 언급될 예정이라고 하며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도 범죄로 규정한다고 한다. 게다가 사랑에 굶주리게 하는 것도 법의 제재를 받는다고 하니 ‘내 자식 내 맘대로 하겠다’는 남들이 웬 참견이나’는 잘못된 정서가 이 기회에 정신 반짝 들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 내 아이라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사람과 관심 이외에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동보호기관의 역할도 돌아봐야 한다. 현장에 대한 조사 방법 등 상담원 교육과 훈련이 강화되어 진정한 아동보호기관이 되어야 한다.



임 영 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아직도 훈육 위해 체벌 필요 53%

JTBC 추적 | 칠곡 아동학대 그 후
아직도 “훈육 위해 체벌 필요” 53%

정인이 양모 “훈육 차원으로...”
칠곡 계모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
조카 물고문 이모 “훈육하려고”

많은 부모가 ‘체벌’만이 ‘학대’인줄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 주제 발표 ‘훈육 vs 체벌 어떻게 다른가?’

“아동학대 사건 중 다수의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의 훈육 및 교육 방식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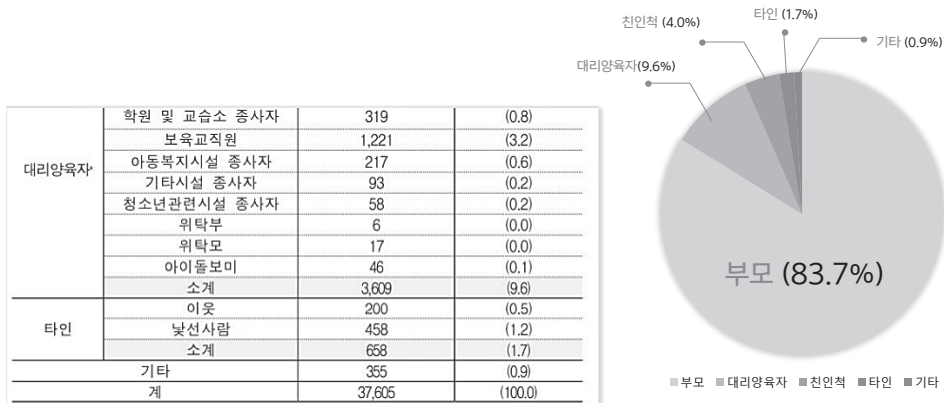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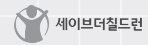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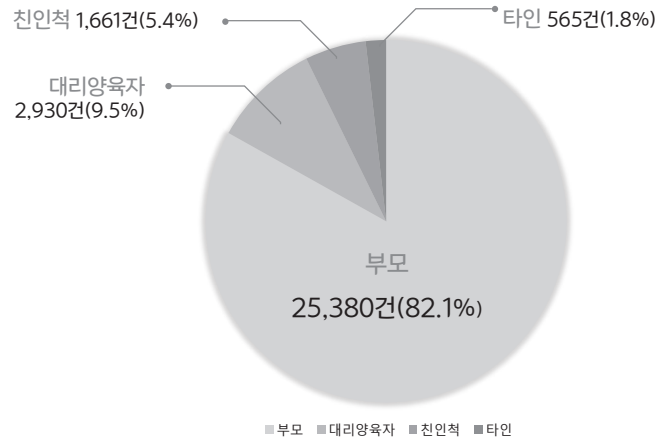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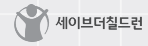
아동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

학대의 4유형 더 적극 알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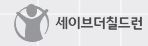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 아동학대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그림 1-3-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다양하고 정확한 육아정보(성장발달이해)

‘부모교육’ 절실

학대이유 ‘너무도 사소했다’
1406명의 가해자, 학대이유
낮잠 안 자서, 밥 안 먹어서,
배변 못 가려서..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세요”





잘못된 인식으로 이끄는 수많은 정보 훈육? = 체벌?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부모

82.1%

아동학대 사례는 중복학대가 48.3%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

42,251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려 해요.

1. 자녀 징계권과 폐지 이유
2. 훈육이 꼭 필요할까?
3. 훈육 대신 다른 대안 방안

♡ 17 ... 💬 6
🔗



훈육에 대한 오해

화풀이

혼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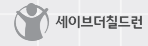
칭찬과 훈육 訓育, 薰育



부모는... '알아야 한다'

훈육과 학대는 한 곳 차!
긍정양육
자존감 높이는 훈육





10명 중 9명 '부모교육' 원해

부모는 알고 싶다!

올바른 훈육
아이의 인격권 보호



아빠 / 자녀 4세

Q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게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네요

어릴 때...

A

임영주 훈육전문가



아빠 / 자녀 3세, 7세

Q

훈육은 항상 매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구두로 몇 차례 주의를 주고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매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제가 안돼서...

A

임영주 훈육전문가



아빠 / 자녀 7세

Q

아이에게 회초리를 안 드립니다
그게 능사인지 고민됩니다

A

임영주 훈육전문가



2022.11.12
영마 주씨, 11세(여)

①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Redacted]

② 영마애는 항상 니표야

③ 영마는 데출이가 제일 좋아

④ 나외말에 확실히 알고 자기단고에 확실히 사람.
자기양생을 멀리내다보면서 꾸준히 앞으로 가는 사람.

⑤ 감사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⑥ 고모에게 영마에게 사랑을 쓰노라 강요를 내뿜었다

⑦ 숙로 영까지 세게나 그자리를 잡지 못한다.

2022.11.12
영마 주씨, 11세(여)

①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② 나 나쁜사람이야

③ 영마애는 항상 니표야

④ 영마는 데출이가 제일 좋아

⑤ 나외말에 확실히 알고 자기단고에 확실히 사람.
자기양생을 멀리내다보면서 꾸준히 앞으로 가는 사람.

⑥ 감사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⑦ 고모에게 영마에게 사랑을 쓰노라 강요를 내뿜었다

⑧ 숙로 영까지 세게나 그자리를 잡지 못한다.



사람이 만기인
너는 하면 안 하는 거 있어...
[Redacted]

아빠 아들, 그리고 영마애 너무 사랑해~

공복 상태에 이제 리얼리티라고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애로 키다~

힘을 줄여서 보낼 영마애 장래의 마음은 분명히

제비 무늬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⑧ 영마애는 11인의 형제 중 한명인 것임은 영이 영지인대로
고사해요~

사람이 만기인
너는 하면 안 하는 거 있어...
[Redacted]

아빠 아들, 그리고 영마애 너무 사랑해~

공복 상태에 이제 리얼리티라고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애로 키다~

힘을 줄여서 보낼 영마애 장래의 마음은 분명히

제비 무늬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⑧ 영마애는 11인의 형제 중 한명인 것임은 영이 영지인대로
고사해요~

양질의 부모교육

부모는...
‘알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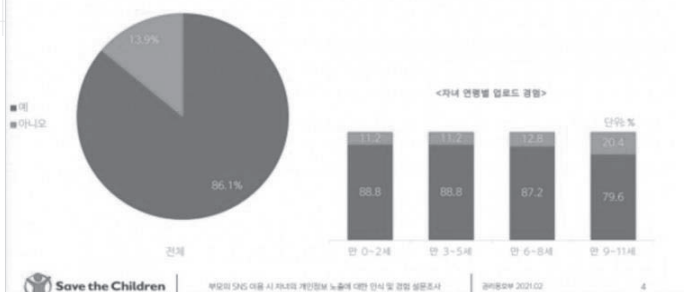
- 자녀에 대한 사랑
- 잘 키우고 싶은 욕구
- 부모 자아실현



셰어런팅(Sharenting)과 부작용

1. SNS에 자녀 사진, 영상, 이야기 게시 경험

- 응답자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나타남.
- 부모들은 만8세 이하의 아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더 게시하는 경향이 있음



0~11세 자녀 부모 **86.1%**

"내 아이 사진 SNS에 올린 적 있다"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법제화 논의한다”



셰어런팅(Sharenting)과 부작용

훈육 중이라며 올린 사진,
아이가 사고를 쳤다며 벽에 붙어 양손을 들고 벌서는 모습...
'부모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아이 마음은 어땠을까'



261 likes

Sharent01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지만 잠시 후 사고쳤다는!!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속이야 #어린이집 #육아스타그램



부모교육 비폭력 양육문화, 디테일(Detail)의 힘, 인식 변화!



김홍도<서당> 서당의 모습을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부모교육’은 세상을 바꾼다!



21C 부모교육

양육자 개념 + 부모 자신...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

자녀가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돌보고
지적·사회적능력을 길러주는

양육자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향후 과제 및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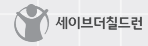
부모교육,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 못하는 이유

70% 시간이 없거나 맞지 않아서
10%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참여 저조 계층 분석

다문화, 특수학교, 직장인 학부모, 학조부모 등
학부모교육 취약계층들은 학부모교육 참여 어려움



전사회적, 전방위적 부모교육

01

부모교육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 기업 등 부모교육 실시 **의무화**
고등학교, 대학 교양과목에 <부모교육>

02

전방위적 부모교육으로 참여 극대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강연

03

부모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적용
예) (출산,양육수당)부모교육 이수 수당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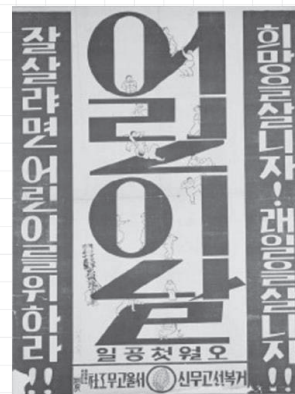
통합전화상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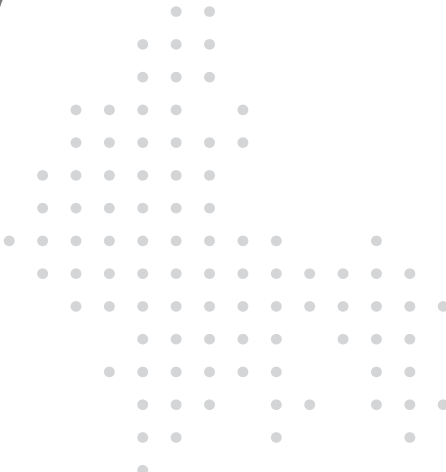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주십시오.
어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세션 1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

발제 1

—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방향
: 영유아 사업을 중심으로

조용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 컨퍼런스]
-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2022. 12. 8(목)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방향: 영유아 사업을 중심으로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목차

- 01 논의 배경: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과 가정 양육 지원의 중요성 강조 -
- 02 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 방향
-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사업
- 영유아 중심 비폭력 양육 지원 사업 관련 -
- 04 양육 지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



01

논의배경:비폭력 양육문화 확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비폭력 양육문화 확산과 가정양육지원의 중요성 강조 -

- ▶ 저출생과 가족구조 변화
- ▶ 부모의 양육 인식 및 환경 변화
- ▶ Digital 기술, 정보 범람 속 '확인 안 된 양육정보' 재생산
- ▶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 및 지역사회 지원의 필요성 강조

01

논의배경:비폭력 양육문화 확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저출생과 가족구조의 변화

- ❖ 세계 최하위 수준의 초저출산으로 인구소멸에 대한 경고
 - '양육지원'에 대한 정부정책 긴박성: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 확대
 - 맞춤형 양육지원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역할 강조
- ❖ 이혼율, 한부모가구수 증가
 - 가족에 의한 육아가능 약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지원 필요성 증가
 - 자녀 양육에 대한 다른 가족의 지원 약화 및 고립육아에 따른 과도한 책임/스트레스 증가
 - ※ 2017년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평균 17% 한부모 가정

01 논의배경:비폭력 양육문화 확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의 양육인식 및 환경 변화

- ❖ 급격한 가족구조 변화, 사회환경 변화는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변화로 연결
→ 많은 밀레니얼 세대 부모:자녀양육방식에 대한 불안,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을 잘 알지 못함
- ❖ 만혼 및 첫출산 시기(32.6세(22년 통계청), OECD 국가의 첫출산시기 평균 29.6세)가 늦어짐에 따라
→ 이전의 생활방식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전환된 환경 적응의 어려움
→ '자녀의 존재' vs '이전의 자기중심의 생활' 간의 중요성에 대한 갈등

01 논의배경:비폭력 양육문화 확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의 양육인식 및 환경 변화

- ❖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22.황옥경연구재인용):자녀양육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 Daniel Kahneman의 연구
텍사스 거주 90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이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자녀양육은 19개 항목 가운데 16번째'
음식준비보다, 집안일보다 후순위로 응답.

01 논의배경:비폭력 양육문화 확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의 양육인식 및 환경 변화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계(수)
전체	53.0	47.0	100.0 (1,228)
어머니	45.1	54.9	100.0 (603)
아버지	60.6	39.4	100.0 (625)
$\chi^2(df)$	29.724(1)***		

- ✓ 부모는 자녀를 위해 더 희생해야한다는 생각에의 동의 정도가 53%로 부모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경우 47%보다 다소 높음
- ✓ 아버지의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에 동의가 60.6 %임

(자료) 권미경(2022, 육아정책연구소)

01 논의배경:비폭력 양육문화 확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Digital 기술, 정보 범람 속 확인안된 양육정보 재생산

❖ Digital 기술 발달로, 넘쳐나는 자녀양육 정보로 오히려 혼란 가중

→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육정보 접근성은 '양육전문가의 긍정적 도움' 도 있지만,
오염되고 왜곡된 양육태도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 증가

* 특히, 불안정한 부모일수록 왜곡된 정보를 재생산의 표적

01 논의배경:비폭력 양육문화 확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 및 지역사회 지원 필요성 강조

❖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 강조

- 인간의 뇌는 영유아 시기(0세~5세, 특히 처음 1,000일) 동안 폭발적 발달
- 생애초기 영유아의 '자극' 과 '결핍' 은 향후 생활에 결정적 영향

❖ 생애 첫 경험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역할 및 영향력 중요

- 영유아가 직접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세계(지역사회)로 영유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이에, 가정양육 지원 확대 및 지역밀착형 양육지원을 통한 지원 필요

02

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방향

- ▶ 국정과제 관련
- ▶ 부모급여 도입
- ▶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및 보육공간 개선
- ▶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 및 지역사회 지원의 필요성 강조

02 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 방향

▶ 국정과제 관련

❖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목표) 임신·출산지원, 영유아·아동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관리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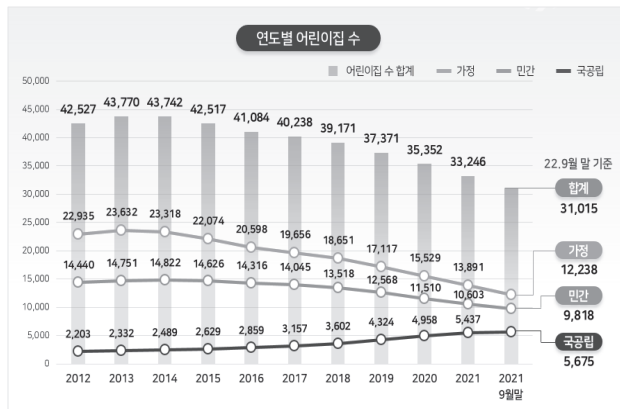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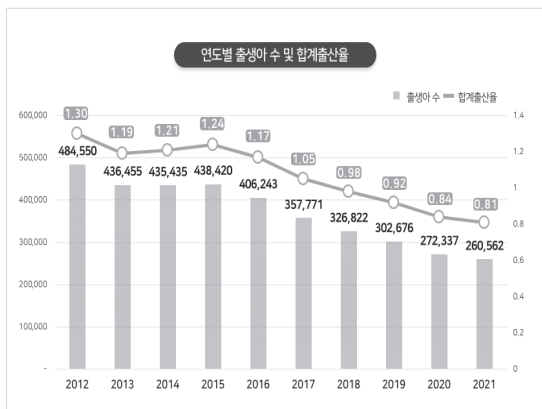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부모급여 신설
- 교사대 아동비율, 시설면적 상향,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가정양육자원 요구증가 예상

02 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 방향

❖ 저출산 장기화로 어린이집 감소 → 가정어린이집 폐원 급증으로 보육 접근성 악화



02 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 방향

▶ 부모급여 도입

❖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을 위해 부모급여 도입

- (기본방향) 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하고, 지급 수준 확대
- (지급대상) 만0~1세(24개월간 지급)

❖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

- ('23)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24)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연령	만0세	만1세	연령	만0세	만 1세	연령	만0세	만1세
가정양육	월30만원		가정양육	월70만원	월35만원	가정양육	월100만원	월50만원
시설이용	월50만원		시설이용	월50만원		시설이용	월50만원	

❖ 아동 대상 수당체계 정비 및 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한 아동양육지원법 제정 검토

02 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 방향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및 보육공간 개선

❖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배치기준 개선

- (추진배경) 보육교사 부담 완화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1인당 아동비율 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교사 1인당 아동수 (한국) 5.2명, (독일 4.6명), 노르웨이 3.3명

- (추진내용) 보육환경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단계적 추진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안)〉

구분	영아반			유아반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현행 기준	1:3	1:5	1:7	1:15	1:20	1:20
개편(안)	1:2	1:4	1:6	1:10	1:15	1:15

* 본개선안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02

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 방향

▶ 가정양육지원 강화

- ❖ (추진배경)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필요성 확대
- ❖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한 부모 양육역량 강화
 - (전달체계 확대:거점어린이집) 가까운 어린이집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밀착형-체험형 부모지원 기반 구축을 통한 양육역량 강화
 - (프로그램 내실화 및 다양화)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 시간제 보육 개편, 확대를 통한 단시간, 일시돌봄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 운영모형 다변화를 통해 접근성 좋은 어린이집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인프라 단계별 확산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사업

- ▶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법적 근거, 설치운영 현황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현황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의 및 법적 근거

- ❖ (정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
- ❖ (목적) 지역사회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체험프로그램, 대어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3조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 ❖ (기능 및 역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보육정책 사업을 정책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 ❖ 지역사회에서 육아지원 허브(HUB) 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담당
- ❖ 지역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양육 특화사업 추진 역할(기획-실행) 확대 추세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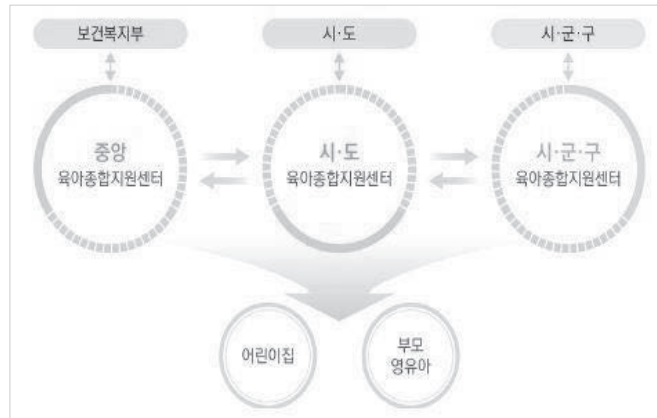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 및 전달체계

❖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총 130개소(22.12월 기준)

- 중앙 1개소
- 시도 18개소(경기 2개소)
- 시군구 11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130개소('22.12. 기준)

- 중앙 1개소
- 시도 18개소
- 시군구 111개소

'22년 신규개소

- 충남 서산시(3월)
- 대전 서구(7월)
- 대구 수성구(10월)
- 충북 영동군(11월)
- 경북 구미시(11월)

중앙(1개소)

경기도북부(9개소)

가평군,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서울특별시(26개소)

강동구,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종로구

인천광역시(7개소)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충청남도(4개소)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대전광역시(3개소)

대덕구, 서구

전라북도(6개소)

고창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광주광역시(3개소)

동구, 서구

전라남도(4개소)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경기도(23개소)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동부,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하남시

강원도(4개소)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충청북도(6개소)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영동군

세종특별자치시(1개소)

경상북도(7개소)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대구광역시(3개소)

동구, 수성구

울산광역시(6개소)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경상남도(6개소)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부산광역시(10개소)

강서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제주특별자치도(2개소)

서귀포시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현황

가정양육지원 사업

1. 공통 부모교육
2. 부모상담(양육상담)
3. 시간제 보육지원
4. 거점어린이집양육지원시범사업
5. 장난감도서관운영
6. 지자체 특화사업

어린이집 지원 사업

1. 아동학대예방교육
2. 어린이집 영유아성행동문제 관리-대응지원
3. 보육교직원상담
4. 열린어린이집지원
5.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연수
6. 표준보육과정,어린이집평가컨설팅
7. 다가치보육어린이집협력사업

지역사회 육아지원 허브(HUB) 기관 역할

- 중앙정부(복지부) 보육정책사업을 직접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체계 핵심 -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공통부모교육

❖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2)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부모 대상으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



수록)자(란다) ! 알(수록)자(란다)!

놀이
안자
알
수록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



놀이를 부탁해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공통부모교육

❖ 권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운영지원으로 변화 중

지금까지는

- ☑ 전국 센터 통일된 부모교육 과정 운영
- ☑ 세분화된 교육 및 운영 기준
- ☑ 동일한 교육과정 운영
- ☑ 업무관리시스템 부분적 기능 개선

앞으로는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을 위해 센터 자율성 확대
- ☑ 교육 구분 간소화 및 운영 세부기준 완화
- ☑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위해 단계적 교육과정 개정 추진
- ☑ 효율적인 실적 입력을 고려한 기능 개선 추진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부모교육 → 자녀, 부모 체험식 교육방식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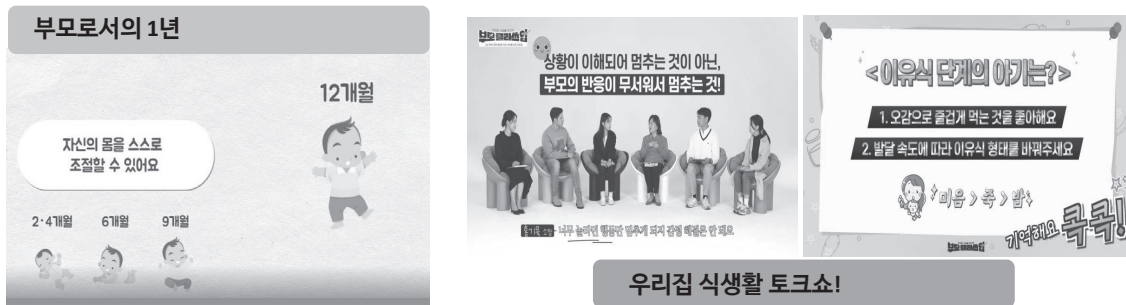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공통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보급

❖ 부모의 관심과 요구도를 반영한 영상제작,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부모상담

❖ 영유아발달, 영유아문제행동, 양육방법 등 다양한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위원 위촉, 부모상담 진행
→ 상담육아 전문가의 '영유아발달상담', 대면(집단, 1:1), 온라인 상담 병행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장난감, 도서대여 지원

❖ 영유아가정에 제공하는 장난감, 도서대여 지원사업 실시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놀이체험실 운영

❖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도록 놀이 공간 및 놀잇감 제공



03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시간제 보육실 운영

❖ 가정양육 이용 영유아의 경우, 지정된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필요한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장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료

※ 시간제보육료는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구분	내용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지원시간	월 80시간



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6시

04

양육지원 사업의 향후 방향성

- ▶ 부모와 가족의 참여 및 체험형 양육지원
- ▶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 ▶ 긍정적 Digital 활용 육아지원(e-양육지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04

가정양육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성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부모와 가족의 참여 및 체험형 양육지원

- ❖ 가족의 자발성, 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기반으로 다양한(소규모, 맞춤형) 프로그램

▶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 ❖ 가족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접근성 최대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내용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실시간 설문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관리-분석 토대 기반)

▶ 긍정적 Digital 활용 양육지원(e-양육지원)

- ❖ 부모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e-육아지원 가능: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가능
- ❖ 거리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e-육아지원(부모참여식 교육) 방안

04

가정양육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성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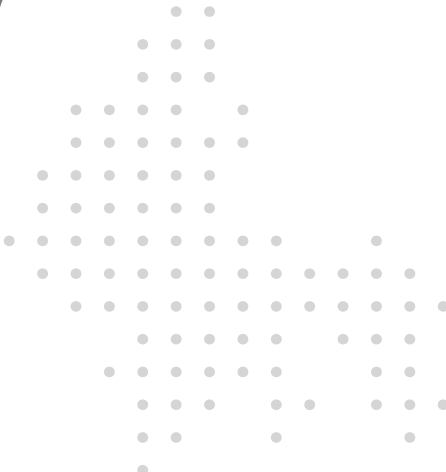
▶ Digital 활용 기반, 가족체험형 프로그램(서비스) 활성화

- ❖ Digital 기술기반 (방구석 콘서트) <영유아와 함께하는 주말저녁 콘서트> 등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양육공동체 활성화

감사합니다





세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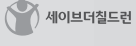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

발제 2

—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항린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김명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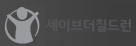
공동연구원: 김의향(가재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문학박사)

조향린(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문학박사)

신보원(연세대학교 CDRI 교사부모교육센터 센터장, 문학박사)

이하연(연세대학교 CDRI 교사부모교육센터 팀장, 문학박사)

연구보조원: 김세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자녀 징계권 폐지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26일 폐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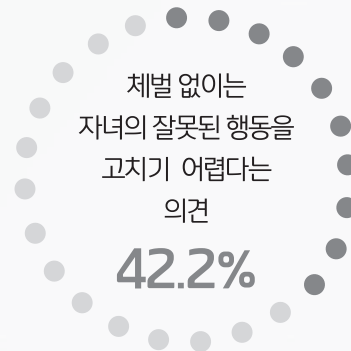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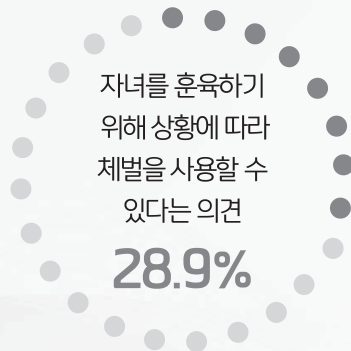
출처 : <https://www.salon.com/2022/07/11/childhood-abuse-health-study/>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직도 만연한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마크로밀엠브레인- 전국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조사>



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민법 '징계권' 삭제 이후,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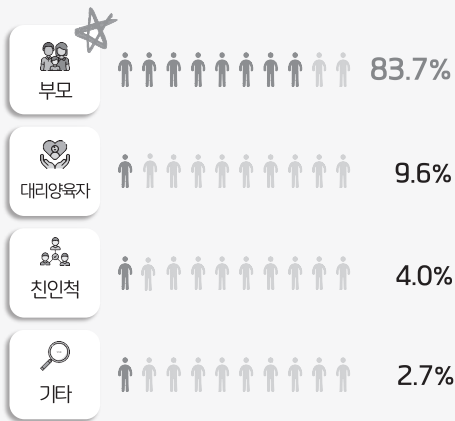


출처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319050004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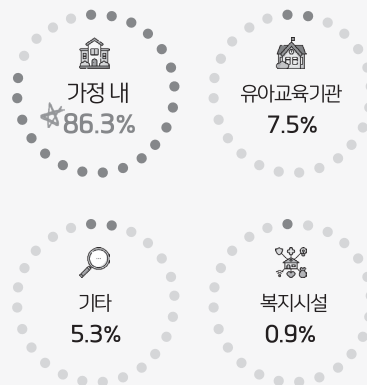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 아동학대사례 발생 장소



출처 :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비폭력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사례

- 1)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존중'과 '체벌의 문제점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폭력 양육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음
- 2) Gershoff와 Durrant(2017)는 체벌 없는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시기, 대상, 내용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01

집중적
중재

(Indicated Intervention)

학대 경험 집단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함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PCIT),
Incredible Years (IY), Nurturing Parenting
Program (NPP) 등

02

선택적 예방
프로그램

(Selective Prevention)

체벌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함

Safe Environment for Every Kid(SEEK),
Adults and Children Together against
violence educational program(ACT),
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PDEP) 등

03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

(Universal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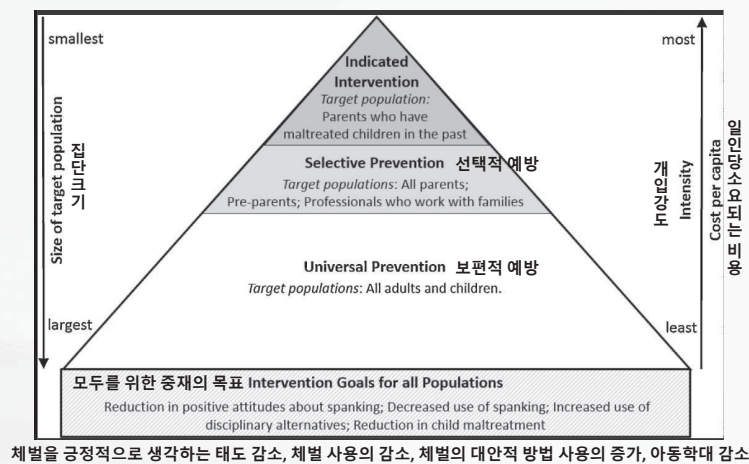
위험 수준과 관계 없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함

캐나다의 'Spanking hurts more than you
think' 'Children see, children learn',
유럽의 Raise your hand against
smacking! 등의 캠페인

세이프더치ildren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림] 비폭력 양육을 위한 개입의 수준과 대상 (Gershoff, Lee, & Durrant, 2017)



세이프더치ildren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외 부모 교육프로그램 사례

사례 1 : 부모-자녀 상호작용 테라피(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http://www.pcit.org/for-parents.html>>



- A ... 행동 문제가 있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일대일 코칭 프로그램
- B ... 부모의 체벌을 줄이고, 연력에 적합한 비폭력 훈육 전략을 교육하고, 아동의 협력적 행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C ... 치료사가 관찰실에서 단방향 거울 또는 라이브 비디오 피드를 통해 자녀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지켜보며 양육 기술에 대한 즉각적인 코칭을 제공
- D ... 테라피를 진행하며 부모의 짜증, 심각도와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자녀의 문제 행동 또한 줄어듬
강압적 상호작용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신체적 체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외 부모 교육프로그램 사례

사례 2 : 인크레더블 이어스(Incredible Years) 부모교육
<<https://incredibleyears.com>>



- A** ... 아동의 행동 문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편적인 예방 프로그램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부모 훈련 구성요소 부분은 아동 복지 맥락에서 중재 프로그램으로 사용됨)
- B** ...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애착을 강화하고, 체벌과 같은 징벌적 양육행동을 줄이고,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부모의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함
- C** ... 부모의 긍정적 훈육방식 사용을 위해 아동 주도 놀이 방법, 칭찬과 긍정적 강화 개념 이해하기를 내용으로 하는 그룹 토론, 문제 해결 관련 실습이 이루어짐
- D** ... 프로그램 실시 결과, 부모의 신체적 체벌은 줄어들고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향상되어 자녀의 행동 문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외 부모 교육프로그램 사례

사례 3 : 너처링 부모교육 프로그램(Nurturing Parenting Program)
<<https://www.nurturingparenting.com>>



- A** ... 적대적이고 방임적인 양육 및 양육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 학대 및 방치 방지를 목적으로 양육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가족 중심 프로그램
- B** ... 부모의 양육 기술을 증진 시키고, 체벌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체벌 사용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둠
- C** ...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목표로 부모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가르쳐 아동학대의 세대 간 순환을 막는 것이 포함됨
- D** ... 비폭력적 양육의 양육철학은 공감, 자기 가치, 자기 인식, 권한 부여, 존엄성을 가진 규율, 적절한 가족 역할 및 자녀의 성장에 대한 연령에 따른 기대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E** ... 가정 방문과 관찰을 통한 일대일 가정 기반 접근과 1:10의 비율로 소집단으로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학습하는 그룹 기반 접근이 함께 사용됨
- F** ... 수업에서 제시된 정보와 기술에 대한 이해나 적절한 활용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위험 수준을 확인하며 반복적 교육을 진행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외 부모 교육프로그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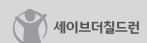
사례 4 : ACT 안전하게 양육하기 프로그램(ACT Raising Safe Kids Program)

<www.apa.org/act>



- A** ... 양육과 관련한 지식을 제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건강한 가족 구축과 학습자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조기 예방 보편적 개입 프로그램
- B** ...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양육 기술을 가르치고자 함
- C** ... 학대와 폭력은 건강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하므로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양육방식과 관행을 점검하도록 함
- D** ... 프로그램 결과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 아동의 체벌 예방/감소, 아동의 공격적 행동 감소/예방, 부모의 사회적 지지 향상에 효과가 나타남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외 부모 교육프로그램 사례

사례 5 : 시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Chicago Parent Program)

<www.chicagoparentingprogram.org>

The Chicago Parent Program



- A** ... 12회기로 진행되는 지역 사회 그룹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 B** ... 아동의 행동문제 개선과 함께 부모의 체벌 감소를 목표로 함
- C** ... 160개 이상의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양육문제를 담은 비디오 장면을 사용하여, 칭찬과 격려, 일상, 한계 설정 등의 양육방법을 익히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
- D** ... 부모, 교육자, 의료 제공자, 기관 지도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뉴욕시의 할렘 아동 구역, 볼티모어시 공립학교, 헤드스타트를 포함한 전국의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음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외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공익 캠페인 사례 🇨🇦 캐나다

토론토 (Toronto)

- ✓ “Spanking Hurts More than You Think”
- ✓ 주요기관과 협력하여, 2004년 10월(아동 학대예방의달) 캠페인을 시작함
- ✓ 10,000개 이상의 포스터를 대중교통 정류장과 지역사회 기관에 배치, 공익 광고를 4주에 걸쳐 방송. 영어와 주요 이민자 언어로 된 75,000개 이상의 브로셔를 배포함.

온타리오 (Ontario)

- ✓ “Children See, Children Learn” (Best Start Resource Centre, 2016)
- ✓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디오 영상을 통해 긍정적인 훈육에 대해 교육함
- ✓ 이 캠페인은 부모가 “ 신체적 또는 정서적 처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온라인 서약에 서명하도록 권장함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외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공익 캠페인 사례 🇪🇺 유럽



Raise Your Hand Against Smac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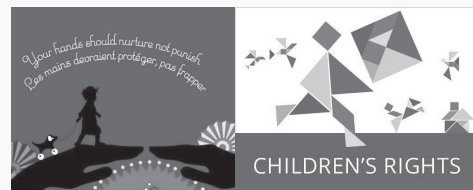
캠페인

46개 유럽 회원국 의회에서는 유럽이 '체벌 없는 지역'이 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
회원국들에게 체벌 폐지를 촉진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인식 제고 출판물, 오디오, 비디오 및 인쇄물 교육 자료를 제공
체벌을 폐지한 회원국들은 비폭력적인 육아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한 좋은 관행을 유럽 이사회와 공유하도록 권장받음

COUNCIL OF EUROPE



CONSEIL DE L'EUROPE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아동학대가 부모의 폭력성과 부주의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욕구를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지식 부족에서 온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비폭력 양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보다는 긍정적 양육 방법 훈련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어 진행되고 있음.

- A ... 보건복지부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통 부모교육과정 “행복한 부모되기”
- B ... 교육부 유아교육진흥원(서울)의 “학부모 캠퍼스”
- C ... 여성가족부 가족센터의 예비부모, 생애주기별, 가족주기별 부모교육
- D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워킹맘 & 워킹대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 비폭력 양육 확산을 위한 공익 캠페인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만든 긍정양육 원칙

긍정양육 129원칙은 긍정양육의
기본전제 1가지, 긍정 양육의 실천원리 2가지, 긍정 양육의 실천방법 9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원칙’

1 긍정 양육의 기본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긍정 양육의 실천원리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긍정 양육의 실천방법

- **자녀 할기** 아이들은 자라다 기쁨과 슬픔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잘 사랑해주세요.
-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계산을 할지 알아차려주세요.
- **관행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습을 바꾸어주세요.
- **공감 설명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 **문제가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 **공감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존중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주세요.
-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 **일찍 마무리하기**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 PDEP) 프로그램 소개

2006년 발표된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의 후속활동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이 캐나다의 조안 듀랜트 교수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

PDEP란? 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의 약자

아동발달 원리를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비폭력적인 양육접근법



- 01 아이가 서서히 자제력을 키우도록 돕고,
- 02 서로 명확하게 소통하며,
- 03 아이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 04 아이에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 05 아이의 능력과 자신감을 쌓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

PDEP 프로그램은 신생아때부터 청소년기가 끝날 때까지의 흔히 생길 수 있는 양육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나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갖도록 하는 경험·사례 중심의 교육과정
현재 아시아 - 태평양, 유럽, 동아프리카, 중동, 캐나다 등 30여개 나라의 세이브더칠드런 지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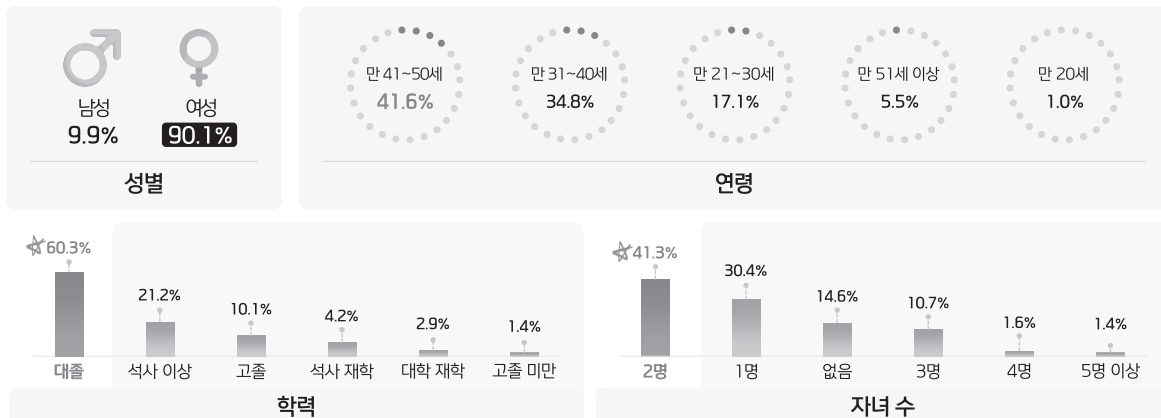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상 : 2018년 ~2022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프로그램 참여자(부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69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제별에 대한 태도', '별 전반에 대한 태도', '부모-자녀 간 자주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생각', '자기 효능감', '궁이기에 대한 생각', 에 대한 응답 분석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프로그램 사업 성과 분석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만족(3점), 매우 만족(4점)으로 구분하여 조사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3.64점 ($SD=0.58$)
- 교육시설 3.59점 ($SD=0.59$)
- 교육교재 3.57점 ($SD=0.64$)
- 워크북 활동 3.53점 ($SD=0.63$)
- 강사 3.73점 ($SD=0.57$)
- 프로그램 길이 3.47점 ($SD=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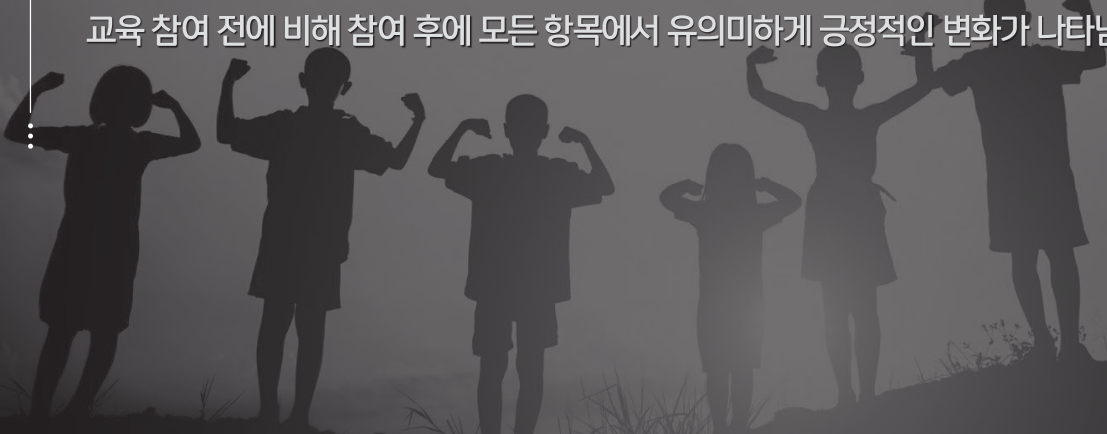


✔ 높은 만족과 추천의사 보임

교육 참여 후 참여자의 변화

금아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별 전반과 체벌에 대한 태도', '자녀의 연령별 발달 특성과 부모-자녀 간 갈등에 대한 이해',
'부모 양육 효능감',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에 대한 이해'의 항목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육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에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벌 전반과 체벌에 대한 태도



벌 전반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선

조사문항 예시

- ✓ 부모가 화나지 않은 상태라면 엉덩이 때리기 정도는 괜찮다.
- ✓ 부모가 아이들과 협상을 하게 되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이다.
- ✓ 벌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더 잘 배운다.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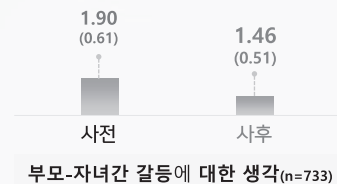
자녀의 연령별 발달 특성과 부모-자녀간 갈등에 대한 이해



자녀의 연령별 발달 특성과
그 시기 경험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이해수준이 높아짐

조사문항 예시

- ✓ 만약 12세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는 아이에게 해명을 할 기회를 주기 전에 벌해야 한다.
- ✓ 만약 6세 아이가 옷을 입지 않으려 한다면, 부모는 억지로 입혀야 한다.
- ✓ 만약 8세 아이가 부모 앞에서 나쁜 말을 쓴다면, 그것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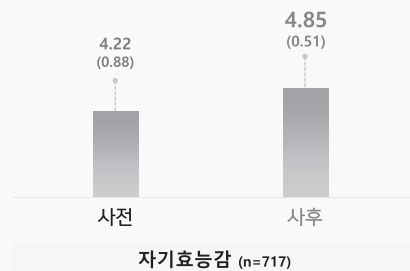
부모 양육 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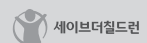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짐

조사문항 예시

- ✓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 ✓ (역채점 문항)나는 자주 부모로써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 ✓ (역채점 문항)내가 하는 말을 아이가 듣지 않으면 나는 매우 화가 난다.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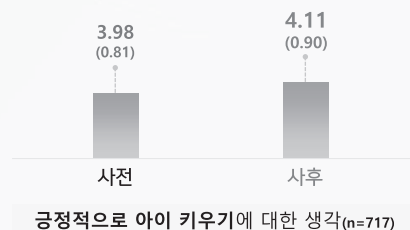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에 대한 이해



긍정적 양육을 더 잘 이해하게 됨

조사문항 예시

- ✓ (역채점 문항)“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의 훈육은 생각하는 의자나 물건을 뺏는 등의 비폭력적인 처벌을 말한다.
- ✓ (역채점 문항)“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로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나쁜 행동을 하고싶은 대로 하게 둔다.
- ✓ (역채점 문항)“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두는 것을 뜻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아키 프로그램 참여 후의 변화



교육의 핵심 주제인 따뜻함과 구조화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훈육에 적극 활용하게 되었음

교육하기 전에는 구조화와 따뜻함을
모르고 혼을 먼저 내기 비뚤었는데
교육 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내용을 통해 배운 따뜻함을 먼저
제공하고 구조화를 주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무언가 분명해진 느낌이다.
아이와 트러블이 생길 때 이제는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 냉장고에 붙여둔 '따뜻함과 구조화'
슬라이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신기할 정도로 상황에 맞는 훈육이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아키 프로그램 참여 후의 변화



부모로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를 먼저 다스리고 잠시 시간을 둘 줄 알게 되었음

눈앞에 있는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잔소리를 해줬는데 장기적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니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따뜻함이 포함된 구조화였다.
내가 생각하던 예의와 범절보다 아이와의
관계형성이 먼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아키 프로그램 참여 후의 변화

아이의 발달에 따른 특징과 기질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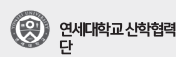
아이들의 성장과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따뜻함과 구조화를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가는 아이의 특징을 좀 더 공부하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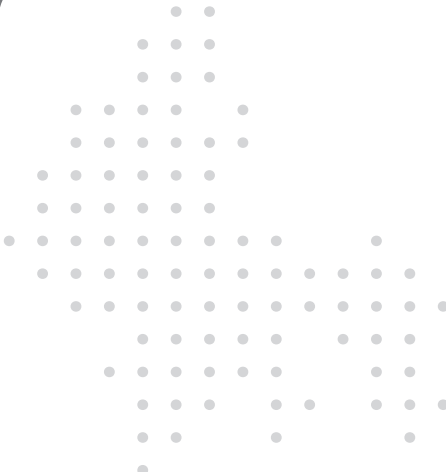
내 아이를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세상이 서툰 아이에 수준에 맞추어
꾸준히 배우고 소통하며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부모로서 양육하고자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식개선의 성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감사합니다





세션 1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

토론

—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

김은희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





세이브더칠드런

비폭력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은희 초빙연구위원



세이브더칠드런

CONTENTS

01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의 필요성

02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과
부모교육의 관계

03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향후 과제

01 들어가며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이후
약 3년 간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2021년 12월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약 730명 배치가 완료되었음.

즉각분리제도나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학대아동지원이 2021년 대비 45% 확대되고
아동학대 예산이 일원화되었으며,
민법상의 징계권이 폐지되기도 하였음

(전민경,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9년 41,389건,
2020년 42,251건, 2021년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인 것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매년 아동의 수는 줄어드는데 아동학대
수는 증가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임.

무엇보다 매년 우리나라 4~5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고 존중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임이 틀림없음

(김은희, 2022)

01 들어가며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의 필요성



특히 2021년 기준(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장소의 86.3%가 가정이고, 학대 행위자의 83.7%가 부모이며
조부모 4%를 포함하면 87.7%가 아동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을 기초로 의존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은
아동학대가 피해 아동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작용할 것
인지를 예측 할 수 있음.

또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경우 스스로 저항하고 대처할
힘이 없어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소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음.

그러나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보고된
「민법'징계권'삭제 이후,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대 부모는 아직도 "잘못된 행동에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체벌은 자녀의 행동문제를 고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이라고 생각하는 등,
폭력적인 양육이 마치 정당한 행위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체벌 및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인식개선과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02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 and 부모교육의 관계



폭력 양육의 원인 1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및 방법의 부족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으로 부정적 양육태도 및 방법의 부족이 35.6%로 가장 많았음(보건복지부, 2016)

이는 부모의 아동중심 및 아동권리 인식개선과 더불어 긍정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폭력 양육의 원인 2

학대 행위자의 과거 학대 경험

2017년 경기도에서 조사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5,082건을 분석한 연구에서 학대행위자 중 68.6%가 과거 정서학대 경험을, 63.7%가 신체학대 경험을, 16.0%가 방임학대 경험을, 4.8%가 성 학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전민경, 2019).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청소년기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대물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음(조희주, 2016).

이는 가해 부모의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재발의 위험이 큼을 의미함.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는 사건 발생 후 관리 차원보다 예방 차원에서 아동권리인식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전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전민경, 2019)

02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 and 부모교육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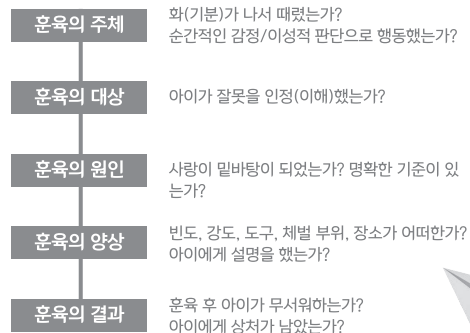
폭력 양육의 원인 3

훈육과 학대 사이 구분의 어려움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인 동시에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감을 가진 양육자이기 있기 때문에 혼란을 느낌.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어떤 행위라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훈육의 주체, 대상, 원인, 양상, 결과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구조를 살펴봐야 함을 강조하였음(정규희, 김희송, 김종한, 양경무, 최인석, 박재홍, 2021).

이에 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방식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사고의 경험과 함께 '훈육과 학대 구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02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 and 부모교육의 관계



폭력 양육의 원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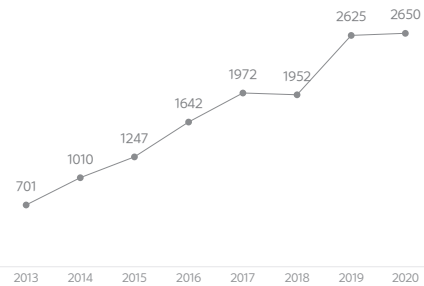
부모됨의 준비 부족

최근 늘어나는 10대, 20대 젊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0대, 20대 젊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2020년 2,650건으로 전체 가정 내 아동학대(26,996건)의 9.8%에 해당함. 이는 2013년 총 701건 (10대 부모 37건, 20대 부모 664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650건으로 3.8배 증가한 수치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가치관의 미정립 및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10대, 20대 시기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은 젊은 부모들이 학업중단 및 극심한 불안으로 낙태, 미혼모,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성 인식 및 가출 청소년 증가 등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들을 위한 부모됨의 준비 및 아동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함.

10대·20대 젊은부모로 인한 아동학대 추이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내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자료 재구성



03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향후 과제



01 아동학대 예방 및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 위한 제도적 마련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 사업들은 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 및 대응체계 마련,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사업,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서비스 지원, 학대행위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대부분 아동학대 발생 후 사후 처리 및 개입 차원의 사업들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인 사전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계획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만 연간 1시간 의무교육일 뿐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부모교육은 신청자 대상의 자발적 교육이라 일반 부모들은 강제성, 의무성이 없음. 문제는 실제 '필요한 부모는 교육을 원하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적, 강제적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녀를 출산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한전할인 등 다양한 출산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부모가 출산 관련 지원의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가 주어져야 함.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03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향후 과제



02 예비 부모교육부터 자녀 맞춤형 부모교육까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추진

우리 사회 가출 청소년의 증가와 청소년의 성 인식·성 경험 연령의 하향화 현상 등은 어린 10대부터 ‘부모됨의 준비’, ‘올바른 가정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신호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중·고등학생 대상 예비 부모교육을 조사해 보면 지자체의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교육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대면교육은 전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학생 대상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의 목록에도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성폭력 예방과 생명존중교육 및 자살예방교육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인식, 예비 부모교육 등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음. 정부나 지자체가 가출 청소년의 증가와 청소년의 성 인식·성 경험 연령의 하향화 현상 등의 사회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채 10대 청소년이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했을 때 단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는 것은 이들로 인한 낙태, 미혼모, 아동학대 등의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또한 가치관 및 신념 등 인간의 인식 개선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 것으로 반복된 교육이 필요함.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아동학대 사후 개입 및 피해아동보호에 집중하여 추진하기보다 예방적 차원을 함께 보완하여 청소년, 대학생, 예비 부모 등을 위한 예비 부모 교육부터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등의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맞춤형 부모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단계적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03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향후 과제



02 예비 부모교육부터 자녀 맞춤형 부모교육까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추진

10대



부모-자녀 관계 되돌아보기,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

20대



성숙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법, 올바른 가족에
대한 의미 등

예비 부모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양육의 즐거움 및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

자녀를 둔 부모



자녀 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부모교육

03 비폭력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향후 과제



03 부모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부모교육 활성화 마련

현재 부모교육은 주로 각 지자체의 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후, 신청자 대상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부모, 일정이 맞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모, 교육이 필요하지만 의지가 부족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부모 등의 경우 좋은 부모 교육이 있어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부모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 내 자녀 관련 부모교육이 진행될 경우, 지역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알람톡 및 문자메세지 발송을 한다거나 건강검진 알람 우편물 배송처럼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춰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또한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누적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수 자원봉사 시상'처럼 지자체별 '우수 부모교육 이수자'를 시상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04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 필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국회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관련 부처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및 관련 뉴스 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어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변길희, 2018).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단지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기기보다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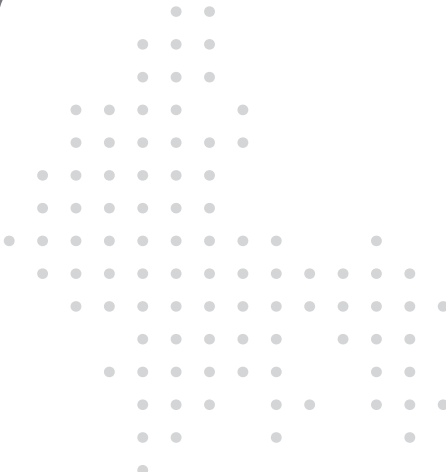
참고 문헌



- 김은희. (202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인식을 위한 경기도 부모교육 현황 및 정책 시사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보건복지부. (2013~202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변길희. (2018).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따른 정책 방향 모색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제와 정책연구, 8(3), 1-34.
- 전민경. (2019). 경기도 아동학대의 지역별 특성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전민경. (2022). 경기도 아동학대 사례관리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정규희, 김희송, 김중환, 양경무, 최인석, 박재홍 (2021). 훈육과 학대의 경계 :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살펴본 자신과 타인의 체벌 기준. 보건사회연구, 41(4), 225-242.
- 조희주. (2016).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부모 및 청소년 대상 통합치료모델 개발 연구. 한국연구재단



감사합니다 😊



세션 1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

토론

—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
: 법령 및 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신수경 |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





세이브더칠드런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

법령 및 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법률사무소 울다함 | 변호사 신수경

01 부모의 의무로서의 친권 1. 친권(親權)



가. 가부장 제도 중심 문화

대가족 하 가문을 다스리는 가장권,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가부장

: 가족으로 부터 축출은 곧 생존권의 상실*

: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인 지위, 부(모)에 대한 자의 절대적 복종

*김상용(2000). 부모의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자녀의 복리). 아동권리연구, 4(2).

나. 성리학적 세계관

효(孝) 강조, 장유유서(長幼有序)

: 자녀의 의지를 억누르고 순응하도록 함

: 자녀는 가산(家産), 부모의 소유

01 부모의 의무로서의 친권 2. 군국주의(軍國主義) 및 목표 지향적 사회문화의 영향



가. 일제시대 군국주의 문화 도입

엄격한 규율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가혹한 체벌이
문화 전반에 일상화

: 학교, 직장, 군대, 가족 내에서 체벌의 일상화

: 체벌을 통한 행동 교정 등이 바람직하다는 왜곡된 가치관

나. 목표지향적 사회문화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사회문화 만연

자녀(아동) → 체벌을 통해서라도 교정시켜야 하는 존재

01 부모의 의무로서의 친권 3. 친권자 법적 개념의 변화(민법 909조)



1958년	①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의 친 권에 복종한다.
1977년	①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 한다.
1990년	①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 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하여 가정법원 이 이를 정한다.
2005년	① 부모는 미성년자 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상동) 제912조 (친권 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 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2014년	(상동)
2015년	(상동)

01 부모의 의무로서의 친권 3. 친권자 법적 개념의 변화(민법 909조)



가. 2005년 개정 전

-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복종, 자녀는 부모에 속한 소유물



- 자녀는 권리의 주체가 아닌, 권리의 객체

나. 2005년 개정

-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가부장에게 주어지는 절대 권력 X
-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 X
- 자녀 복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친권의 양면적 특성)로 변화

01 부모의 의무로서의 친권 3. 친권자 법적 개념의 변화(민법 909조)



다. 외국의 경우



[영국]

부모의 책임 (parental responsibility)

: 영국 아동법(Child Act 1989)에서는 부모의 법적 권리, 역할, 권한, 의무, 권위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부모의 책임'을 명시



[캐나다]

부모의 '권한 (authority)'

: 권한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

: 부모에게 주어진 힘으로서의 "권리"가 아닌 양육, 신체적·심리적 보호, 건강과 안전, 교육, 의식주의 제공

할 수 있는 지위로서의 "권한"

02 비폭력 양육(훈육)의 필요성 1. 개념



가. 체벌

: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표준국어사전)

: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해도 신체적 유형력이 사용되고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이 유발되는 모든 종류의 벌 (UN 아동권리위원회)

ex) 손이나 채찍, 막대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을 때리는 것,

발로 차거나 흔들거나 던지거나 할퀴거나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아이들이 불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 형태 및 아동을 멀리하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위협하고, 겁을 주고 비웃는 등의 비신체적 형태의 체벌도 포함



나. 징계

: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 (표준국어대사전)

→ 체벌은 징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

02 비폭력 양육(훈육)의 필요성 1. 개념



다. 훈육

: 아동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에 있는 부모의 행동이나 말*

✓ 징계와 훈육의 차이*

	징계	훈육
목적	아동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였을 때 일정한 제재	아동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쳐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적인 사회화
관계성	조직과 같은 특별 권력관계	부모나 교사 등 아동 보호자와 아동간

*김응재(2016). 제3부 한국인의 가치관과 인성교육: 아동기 올바른 훈육(訓育)을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과 효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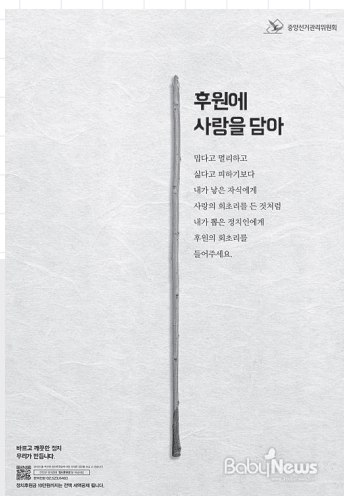
*이세원(2019).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02 비폭력 양육(훈육)의 필요성 2. 체벌 등 관련 현황



- ✓ 2019. 정부‘포용국가 아동정책’ 체벌에 대한 인식 조사
: 응답자 중 76.8%가 체벌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함
(매우 필요하다(2.0%), 필요하다(6.5%),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68.3%))
- ✓ 2019, 2020. 세이브더칠드런 진행 설문조사(성인 1만명 대상)
: 응답자 중 73.1%, 69.4%가 체벌이 사용가능한 수단이라고 답함
- ✓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아동 중
74%가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함
- ✓ 2020. 세이브더칠드런 진행 설문조사(만14세 이상 아동 1000명)
: 77.3% 최근 1년간 가정 내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함

02 비폭력 양육(훈육)의 필요성 2. 체벌 등 관련 현황



‘사랑의 때’ 레토릭 : 애정 어린 조언, 비판의 의미로 사용

- ✓ 공공기관 등에서도 분별없이 사용
: 2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원금 홍보자료를 만들며
회초리 그림과 함께,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 처럼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후원의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라는 문구를 사용
: 2017. 대선 및 이후 선거 등에서도 사용됨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라는 슬로건과 함께 회초리를 내걸기도 함)
- ✓ 체벌을 통한 훈육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체벌의 긍정적인
효과나 이미지에 대한 환상이 존재

02 비폭력 양육(훈육)의 필요성 3. 관련법상 체벌 금지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년 개정).

◆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 조사*

학교 선생님께서 신체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은 2011년 38.4%에서 2018년 12.2%로 약 70% 가까이 감소
체벌 금지 후, 교육 사회에서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지도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

상벌점제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02 비폭력 양육(훈육)의 필요성 3. 관련법상 체벌 금지



나.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 개정).

다. 민법상 징계권 폐지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1년)

02 비폭력 양육(훈육)의 필요성 3. 관련법상 체벌 금지



- ✓ 훈육의 의미 - 아동을 도와주려는 의도적인 사회화
 - : 6세 이하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의 의도와 달리 자신의 행동과 체벌의 인과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 : 체벌을 통한 훈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
- ✓ 아동권리의 침해
 - : '사랑의 때'이든 명분 없이 아동을 때리는 것이든, 그 의도나 강도에 상관없이 체벌은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권리를 침해
- ✓ 사회에서 체벌을 관대하게 바라볼 때, 아동학대는 더욱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음
 - : 징계권폐지로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 대안적 훈육 방식에 대한 논의
 - :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교육현장의 변화 참조

* "When Do Children Understand Consequences?", Judy Arnall.

03 비폭력 양육(훈육)에 대한 법원의 태도



1. 체벌을 징계권의 행사로 본 판결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대방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2. 징계권 자체는 인정하되, 사안에서는 부정한 판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어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03 비폭력 양육(훈육)에 대한 법원의 태도



3. 체벌금지 취지의 판결

“사랑의 매란 없다. 사랑과 매만 있을 뿐이다. 사랑이 폭력을 수반하면, 사랑은 잊히고 폭력만 각인된다. 폭력이 수반된 훈육은 사랑도 아니다. 때린 사람의 착각일 뿐이다. 자신은 사랑이었다고 믿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 폭언과 매에 사랑만 담기지 않았었음을 그도 안다. 그가 알면 아이들도 안다. 사랑과 폭력을 쉽게 준별하고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렵도 없다. 절대 구분할 수 없다. 그렇기에 폭력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훈육이든, 사랑이든, 어떤 명목에서도 아예 쓸 수 없는 방식이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고합49 판결 중)

03 비폭력 양육(훈육)에 대한 법원의 태도



4. 학대행위자의 항변과 판단기준

▶ 가해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

학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함.

이 경우에는 다른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폭행의 정도 및 경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가해자의 평소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03 비폭력 양육(훈육)에 대한 법원의 태도

- “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 하에 수차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대화나 그 밖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구체적 학대행위의 태양 및 정도, 전후사정(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눈물을 흘리는 등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 등을 더하여 보면”

5. 양형인자의 개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04 토론 : 비폭력 양육의 방식 1. 타임아웃



“타임아웃” 훈육법이라 함은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동의 활동을 잠시 중단시키고

다른 장소로 격리시켜 조용하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방식

“생각하는 의자” 또는 “생각하는 방” 등을 활용하여 아동이 육체적인 행동의 제약을 받는 대신에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하고, 자신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체벌 등 육체적 학대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훈육자의 과잉 된 감정을 식히고, 피훈육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훈육법이라 판단되어

가정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널리 사용

그러나 이 역시 아동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방임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상에 놓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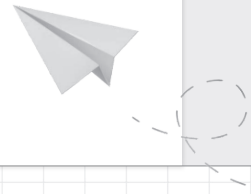
판례에서 보이는 타임아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 1) 타임아웃을 실시하는 주체의 시야에서 아동이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는 것
 - 2) 타임아웃을 전후하여 아동에게 교육과 지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아동의 감정을 어루만쳐 주어야 함
- 두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 되지 아니하면,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

04 토론 : 비폭력 양육의 방식 1. 상벌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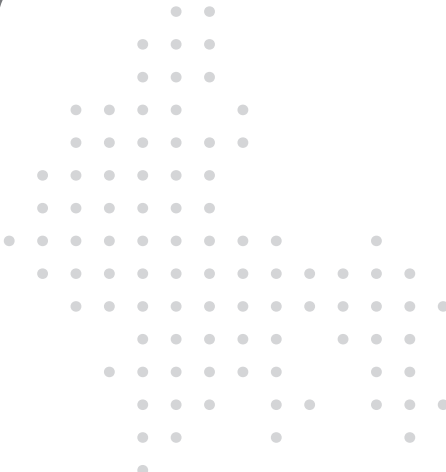
- ✓ 지도와 훈육의 의도에 부합하는 아동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아동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로 교육현장에서 활용
- ✓ 상벌점제에 대하여 학생(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실제 교육청단위로 상벌점제를 폐지한 곳도 있음.
- ✓ 최근, 상벌점제 등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 논의가 있음.
- ✓ 학생인권, 아동인권과 대립되는 방향으로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감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션 1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

토론

—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
: 훈육과 학대 사이, 그 비극의 시작을 막으려면

서이슬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아이는 누가 길러요> 저자





훈육과 학대 사이, 그 비극의 시작을 막으려면

서이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아이는 누가 길러요> 저자)



아이는
누가
길러요.

우리시대의
논리
25

서이슬 지음

무마니타스



“아이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름의 삶을 살며,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 부모는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며 성장을 도울 뿐이다. 아이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 주느냐, 아니면 휘방을 놓느냐는 아이와 양육자가 놓인 환경과 구조, 즉 사회와 국가에 달려 있다.”

- 프롤로그 중에서

고립된 양육자가 잘못된 훈육과 학대의 가해자가 된다

“육아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라는 이해

“그 어려운 일을 당신이 해내고 있다”
라는 인정

그리고 양육자를, 아동을
기다려주는 사회적 분위기



건강한 양육 문화 조성의 토대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양육자가 겪는
어려움에 관해 경험하거나
교육받은 적 없는 부모



잘못된 양육문화와 학대의 씨앗



육아서, 포털 사이트의 지식in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질적인 양육 고민과,
양질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모들



감시와 신고 이전에
✓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의 예시와 방향 미국에서의 경험

WIC
(Women, Infants, Children)



WIC 오피스 내 대기 공간의 모습



세션 1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



**Psychology
Reveals How
Spanking
Harms a Child's
Mental Health**



출처: Power of Positivity 웹사이트 <https://www.powerofpositivity.com/spanking-harms-child-mental-health/>

대상자별 교육 커리큘럼(권장)

기본 교육 (모든 대상)

- ①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방법
- ②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
- ③ 식사계획 방법(식사구성안)
- ④ 식품위생

주요 영양문제별 교육

- ① 빈혈(모든 대상)
- ② 저체중(영아, 유아)
- ③ 비만 (영아, 유아)
- ④ 편식 (영아, 유아)
- ⑤ 변비 (영아, 유아)

임신부 식생활·영양 관리

- ① 임신부 식생활 지침
- ② 임신 시 변화
- ③ 임신 시 체중변화·영양관리
- ④ 임신 중 위험요인
- ⑤ 모유수유
- ⑥ 산후조리

출산부 및 영아 식생활·영양관리

- ① 수유부 및 영아 식생활 지침
- ② 모유수유
- ③ 이유보충식 도입 원칙
“우리 아이 무엇을 얼마나 먹일까?”
- ④ 이유식 만들기

유아 식생활·영양관리

- ① 어린이 식생활 지침
- ② 유아 영양관리
- ③ 우리아이 간식으로 무엇이 좋을까?
- ④ 우리아이 좋은 식습관 만들기
- ⑤ 치아 관리

4~5세 유아용 교육자료

- ① 식품 이름과 유래 알기
- ② 식사구성안 알기
- ③ 식품 위생(손씻기 등)
- ④ 기타 (편의점, 간식, 식사예절 등)





세이브더칠드런

보육/교육 기관의 역할 올바른 양육문화의 실천자이자 제공자

세이브더칠드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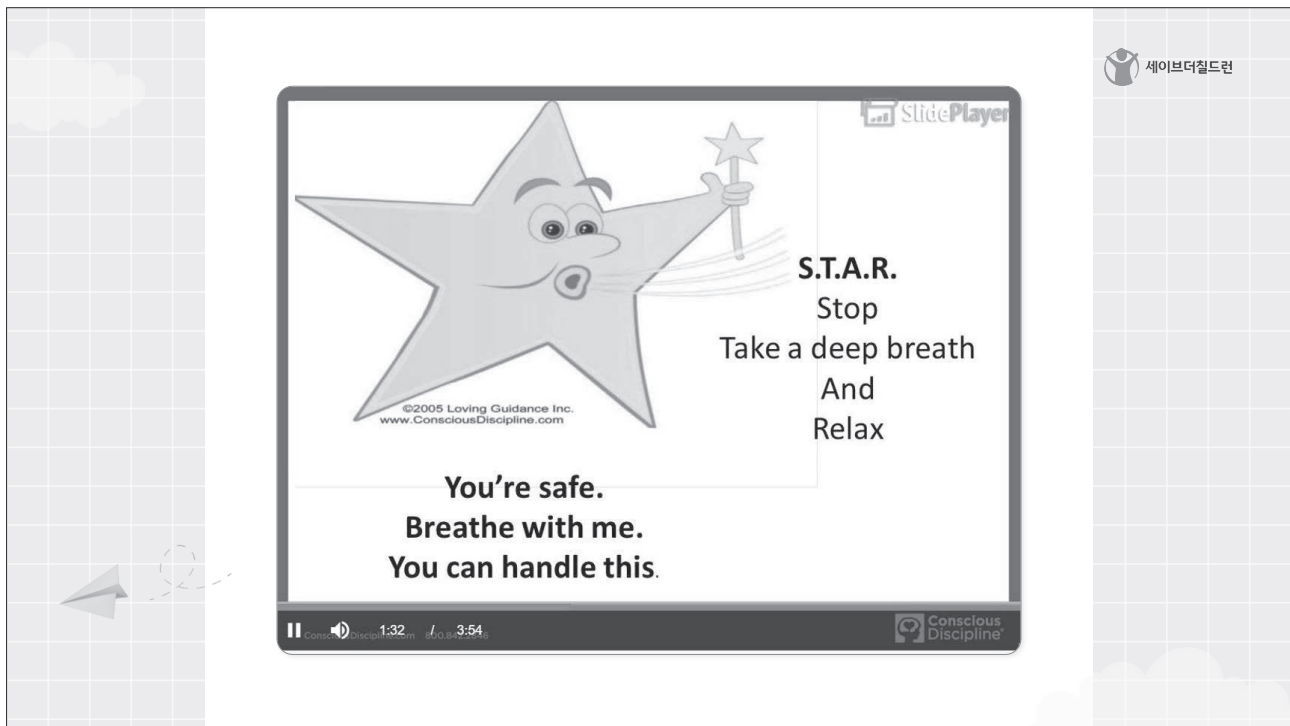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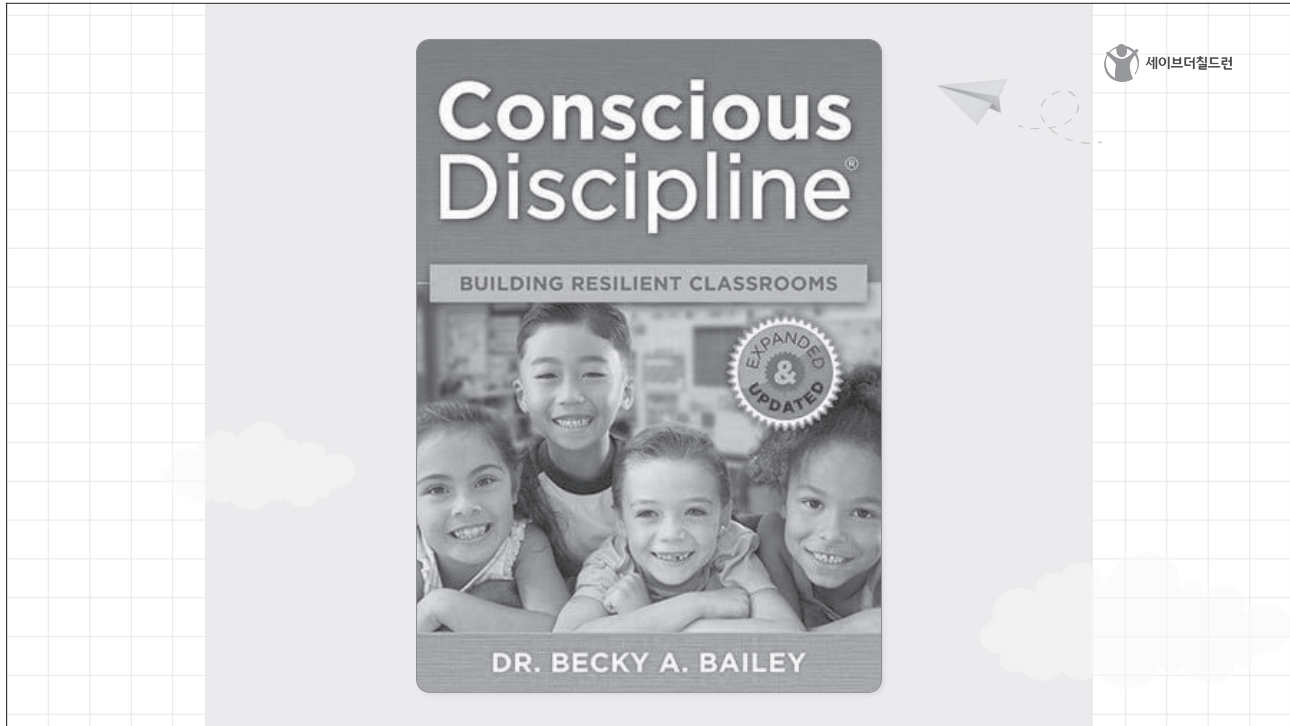
Head Start, Conscious Discipline의 예



Head Start

Bauer's Head Start families and children enroll in either our Preschool or Pre-kindergarten Center-Based programs. Both programs provide comprehensive age-appropriate educational experiences that promote the school readiness of the individual children and support families in preparing for kindergarten.

Head Start Center-Based Program





**Safety.
Connection.
Problem-
Solving.**

Conscious Discipline®

A Positive and Peaceful Approach to Parenting!

Parent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jobs we all have, yet we receive very little training for it. Conscious Discipline is an adult-based intervention with child-based outcomes. Through this social-emotional program, we learn how to "discipline" ourselves to help our children learn. Mark your calendars today!

Who Should Attend:
Parents of Students PreK-2nd grade at Cunningham, Durbin, Hickory, Julington, Ocean Palms, PV/PV, Palencia, Picolata, Timberlin, and Wards.

When:
Thursday, November 10, 2022
5:30 Dinner
6:00—7:00pm Program

Where:
Creekside High School
100 Knight's Lane
St. Johns, FL 32259

Cost: FREE
Childcare for ages 3+ provided!

During this session, you will learn about:

- The Brain State Model to help understand how your state dictates your child's state
- How to manage your own emotions to better respond to challenging behaviors
- An introduction to the process of self-regulation
- Make & Takes that can be used at home when practicing breathing strategies
- Giveaways including Conscious Discipline Products!
- Dinner will be provided

01



임신-출산-육아-취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육자가
긍정적 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

02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보건/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

03



긍정적 양육문화를 조성하는
실천자이자 제공자로서
보육/교육 기관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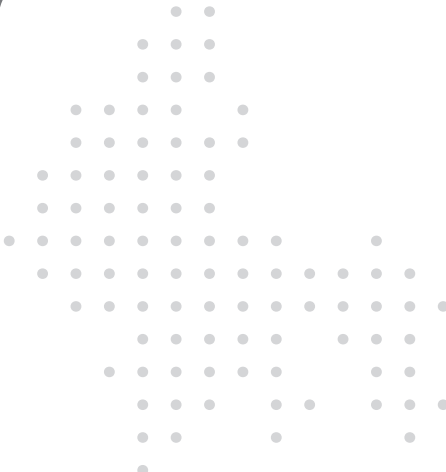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세션 2

아동학대의 현장



세션 2

아동학대의 현장

기조강연

아동학대 현황 및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강정은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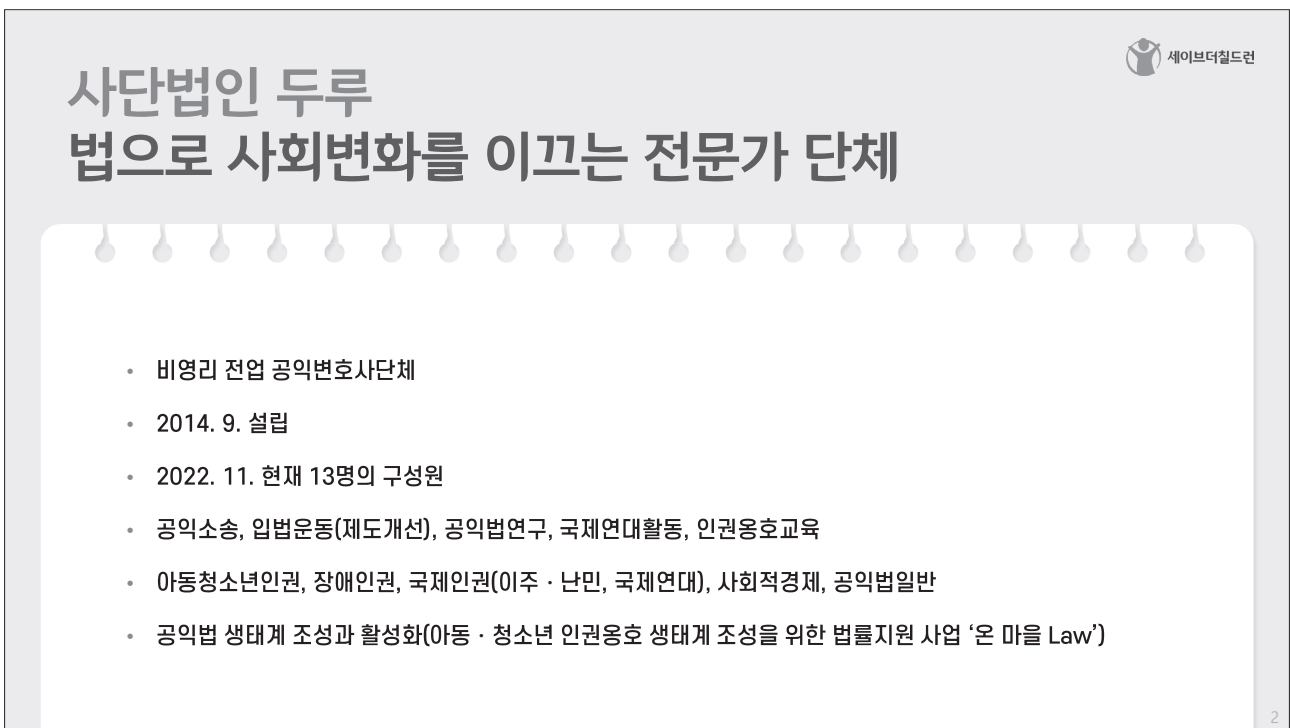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현황 및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2022. 12. 8.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법으로 사회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단체

-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 2014. 9. 설립
- 2022. 11. 현재 13명의 구성원
- 공익소송, 입법운동(제도개선), 공익법연구, 국제연대활동, 인권옹호교육
- 아동청소년인권, 장애인권, 국제인권(이주·난민, 국제연대), 사회적경제, 공익법일반
- 공익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2

CONTENTS

-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3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4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한 입법 운동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모습 그대로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한 입법 운동

-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 “부모의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 합의, 국민 여론에 아동은?
- 가정은 특별하다?

6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한 입법 운동



7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한 입법 운동



8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한 입법 운동

- 2019년 10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 2020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약화시키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2. '징계'와 '훈육'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915조상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시키지 말며, (중략)

9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1월 징계권 삭제

- 정부와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한 귀한 입법운동 사례
- 대한민국 61번째 체벌금지 국가

10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징계권 삭제, 과연 현장은 달라졌을까 ?

11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1.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신고건수 (증가율)	34,169 (15.1%)	36,417 (6.6%)	41,389 (13.7%)	42,251 (2.1%)	53,932 (27.6%)
국내 신고건수	34,166	36,416	41,389	42,247	53,928
해외사례	3	1	0	4	4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30,923	33,532	38,380	38,929	52,083
학대 판단건수 (증가율)	22,367 (19.6%)	24,604 (10.0%)	30,045 (22.1%)	30,905 (2.9%)	37,605 (21.7%)

12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2.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2,367 (100)	24,604 (100)	30,045 (100)	30,905 (100)	37,605 (100)
부모	17,177 (76.8)	18,920 (76.9)	22,700 (75.6)	25,380 (82.1)	31,486 (83.7)
친인척	1,067 (4.8)	1,114 (4.5)	1,332 (4.4)	1,661 (5.4)	1,517 (4.0)
대리양육자	3,343 (14.9)	3,906 (15.9)	4,986 (16.6)	2,930 (9.5)	3,609 (9.6)
부양의종가인	247 (1.1)	270 (1.1)	363 (1.2)	444 (1.4)	403 (1.1)
유치원 교직원	281 (1.3)	189 (0.8)	155 (0.5)	118 (0.4)	140 (0.4)
초·중·고교 직원	1,345 (6.0)	2,060 (8.4)	2,154 (7.2)	882 (2.9)	1,089 (2.9)
학원 및 교습소	217 (1.0)	176 (0.7)	320 (1.1)	208 (0.7)	319 (0.8)
보육교직원	840 (3.8)	818 (3.3)	1,384 (4.6)	634 (2.1)	1,221 (3.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85 (1.3)	313 (1.3)	408 (1.4)	556 (1.8)	217 (0.6)
기타시설 종사자	60 (0.3)	27 (0.1)	63 (0.2)	12 (0.0)	93 (0.2)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2 (0.1)	33 (0.1)	87 (0.3)	14 (0.0)	58 (0.2)
위탁부	4 (0.0)	7 (0.0)	3 (0.0)	4 (0.0)	6 (0.0)
위탁모	17 (0.1)	2 (0.0)	8 (0.0)	16 (0.1)	17 (0.0)
배이비시터	15 (0.1)	11 (0.0)	41 (0.1)	42 (0.1)	46 (0.1)
타인	294 (1.3)	360 (1.5)	663 (2.2)	565 (1.8)	658 (1.7)
기타	441 (2.0)	304 (1.2)	364 (1.2)	369 (1.2)	355 (0.9)
파악안됨	45 (0.2)	-	-	-	-

13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4.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망자 수	38	28	42	43	40

5. 재학대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재학대 건수	2,160	2,543	3,431	3,671	5,517

14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7. 즉각분리로 분리보호된 피해아동 현황

(단위: 건, %)

구분	유형	건수	비율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합계	1250	(100.0)
	친족보호	383	(30.6)
	가정위탁	22	(1.8)
	시설입소	843	(67.4)
	기타	2	(0.2)

15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보건복지부, 2022. 5. 31. 보도참고자료 “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437명 발생”
- 2021년 보호대상아동 3,437명 중 121명(3.5%) 장애아동
- 최근 5년간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 중 ‘학대’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최근 5년간 (각 연도말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단위: 명, (%)) >

연도	합계	유기	미혼부모 · 혼외자	미아	비행·가 출·부랑	학대	부모빈곤 ·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교정 시설입소	부모이혼 등
2021	3,437	117 (3.4)	366 (10.6)	-	293 (8.5)	1,660 (48.3)	170 (4.9)	275 (8.0)	101 (2.9)	99 (2.9)	356 (10.4)
2020	4,120	169 (4.1)	466 (11.3)	11 (0.3)	468 (11.4)	1,766 (42.9)	181 (4.4)	279 (6.8)	75 (1.8)	166 (4.0)	539 (13.1)
2019	4,047	237 (5.9)	464 (11.5)	8 (0.2)	473 (11.7)	1,484 (36.7)	265 (6.5)	297 (7.3)	83 (2.1)	-	736 (18.2)
2018	3,918	320 (8.2)	623 (15.9)	18 (0.5)	231 (5.9)	1,415 (36.1)	198 (5.1)	284 (7.2)	92 (2.3)	-	737 (18.8)
2017	4,125	261 (6.3)	847 (20.5)	12 (0.3)	227 (5.5)	1,442 (35.0)	223 (5.4)	279 (6.8)	87 (2.1)	-	747 (18.1)

16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보건복지부, 2022. 5. 31. 보도참고자료 “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437명 발생”
- 보호조치 유형 중 시설입소 2,183명 (63.5%)

< 최근 5년간 (각 연도말 기준) 보호조치 유형 (단위: 명, (%)) >

연도	합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임시보호 시설	자립지원 시설	보호치료 시설	공동생활 가정	기타	소계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2021	3,437	2,183	996 (45.6)	243 (11.1)	33 (1.5)	282 (8.5)	546 (25.0)	83 (3.8)	1,254	75 (6.0)	1,028 (82.0)	151 (12.0)
2020	4,120	2,727	1,131 (41.5)	342 (12.5)	20 (0.7)	452 (16.6)	714 (26.2)	68 (2.5)	1,393	88 (6.3)	1,068 (76.7)	237 (17.0)
2019	4,047	2,739	1,707 (62.3)	401 (14.6)	- (0.0)	- (0.0)	625 (22.8)	6 (0.2)	1,308	104 (8.0)	1,008 (77.1)	196 (15.0)
2018	3,918	2,449	1,300 (53.1)	494 (20.2)	- (0.0)	- (0.0)	648 (26.5)	7 (0.3)	1,469	174 (11.8)	938 (63.9)	357 (24.3)
2017	4,125	2,421	1,467 (60.6)	310 (12.8)	- (0.0)	- (0.0)	625 (25.8)	19 (0.8)	1,704	285 (16.7)	996 (58.5)	423 (24.8)

17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장애아동 학대
현황은?

18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세이브더칠드런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2021)]

• 연구 방법

연구설계 → 조사 및 분석 → 개선방안 도출

문헌 연구 + 질적 조사: 초점집단 서면조사(32명), 전문가 자문

• 연구 차별성

복지적 개입, 지원체계 → 사법적 개입, 법제도의 정비 및 개선방안 검토

‘아동’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 관점

• 연구진

책임연구원: 원혜옥

공동연구원: 김재희(성결대학교), 강정은 · 마한열(사단법인 두루)

자문협력: 강은영(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19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 의의

• 장애아동 정의

아동 (아동복지법)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 장애인학대 정의

장애인복지법 (정서적 · 언어적 폭력, 경제적 착취 x , 아동학대 개념)

• 아동학대 정의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의 특성

- **은폐성** :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 지원정책의 중요성
- **중첩성** :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방임 / (행위자) 가정 + 시설
- **지속성과 반복성** : (재학대의 빈도)
- **행위자의 다양성** : 가정 + 시설 및 서비스기관 등
- **학대 판단기준의 모호성** : 보호 / 훈육 / 학대

21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 (1) 통계 분석

- 2015년~2017년 주민등록된 아동 중 장애아동의 인구비율 0.81~0.85%
-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장애아동의 비율 2.1~3.6%; 인구비율 대비 아동학대발생비율 2.5~4.4배 ↑

표3. 장애아동 인구 현황

	등록 장애인 인구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18세 미만 인구
2015	2,490,406	2.91%	72,583	0.81%	8,961,805
2016	2,511,051	2.87%	72,139	0.83%	8,736,051
2017	2,545,637	2.84%	72,260	0.85%	8,480,447
2018	2,585,876	2.81%	72,618	0.89%	8,176,335
2019	2,618,918	2.84%	74,362	0.94%	7,928,907
2020	2,633,026	2.87%	75,482	0.98%	7,710,946

표4. 학대 피해아동 중 장애아동

건수 (비율)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장애의심	합계
2015	139 (0.6)	355 (1.5)	344 (1.4)	838 (3.5)
2016	205 (0.6)	534 (1.5)	510 (1.5)	1,249 (3.6)
2017	93 (0.3)	318 (1.0)	300 (0.9)	711 (2.1)

22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 (1) 통계 분석

- 2018년~2020년 등록장애인 중 장애아동 비율 2.81~2.87%
- 장애인학대 사건 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비율 14.3~17.2%; 5~6배 ↑

표5. 학대피해장애인 중 장애아동

연수 (비율)	17세 이하	19세 이하	합계
2018		127 (14.3)	889
2019		163 (17.2)	945
2020	133 (13.2)	31 (3.1)	1,008

표6. 장애인 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2018	19세 이하	77(43.3)	46(25.8)	18(10.1)	8(4.5)	4(2.2)	25(14.0)	178(100)
	전체	339(27.5)	221(17.9)	111(9.0)	302(24.5)	32(2.6)	229(18.6)	1234(100)
2019	19세 이하	95(44.4)	55(25.7)	18(8.4)	13(6.1)	1(0.5)	32(15.0)	214(100)
	전체	415(33.0)	253(20.1)	119(9.5)	328(26.1)	15(1.2)	128(10.2)	1,258(100)
2020	17세 이하	55(35.7)	49(31.8)	23(14.9)	1(0.6)	-	26(16.9)	154(100)
	18~19세	16(38.1)	12(28.6)	3(7.1)	5(11.9)	-	6(14.3)	42(100)
	전체	378(29.9)	311(24.6)	134(10.6)	321(25.4)	-	120(9.5)	1,264(100)

23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 (1) 통계 분석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2016~2020)>

-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중 장애아동 비율 증가: 2016(2.97%) → 2020(4.36%)

<서해정 외 3인(2016),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연구>

- 장애아동 인구대비 학대 신고율: 비장애아동 3배 ↑
- 학대피해 장애아동 중 수급자의 비율 비장애아동 2.6배 ↑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비장애아동 1.4배 ↑
- 보호조치 비장애아동에 비해 시설보호나 입원 비율 ↑, 원가정보보호 비율 ↓

24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 (1) 통계 분석

<2020년 장애아동 · 비장애아동 학대현황 비교>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v.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학대피해 장애아동 주된 연령대 13~15세, 장애아동 16~17세의 피해가 많고 6세 이하 비율 낮음
- 학대피해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45.1%
- 부모에 의한 학대 비중 ↓, 타인 및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비율 ↑ (전체 학대피해아동과 비교)

표13.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관계	부모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 아닌 기관 종사자
건수	38	28	42	43	40
비율 (%)	48.9	7.5	17.3	23.3	3.0

표14. 학대행위자와 전체 피해아동과의 관계

관계	부모	친인척	타인	대리양육자	기타
건수	25,380	1,661	565	2930	369
비율 (%)	82.1	5.4	1.8	9.5	1.2

25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 (1) 통계 분석

<2020년 장애아동 · 비장애아동 학대현황 비교>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v.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학대유형 성적학대와 방임의 비중이 높음 (v. 전체 학대피해아동)
- 지원유형

표 17.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증재	진정	상담	기타	계
48	34	143	76	149	3	2	-	746	114	1,315
3.7	2.6	10.9	5.8	11.3	0.2	0.2	-	56.7	8.7	100.0

표18. 전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위: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상담	423,447	65.0	243,000	72.4	123,239	74.4
의료지원	5,710	0.9	1,533	0.5	420	0.3
심리치료지원	60,569	9.3	26,148	7.8	11,568	7.0
가족기능강화	63,797	9.8	19,384	5.8	23,740	14.3
학습 및 보호지원	24,689	3.8	2,433	0.7	1,205	0.7
사건처리지원	50,347	7.7	20,492	6.1	2,387	1.4
행위자수탁프로그램	618	0.1	17,948	5.3	297	0.2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1,069	0.2	836	0.2	157	0.1
기타	21,373	3.3	3,844	1.1	2,573	1.6
계	651,619	100	335,818	100	165,586	100

26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 (2) 형사판결 분석

- 2017. 1. 1. ~ 2021. 9. 13. '장애아동' 판결문 총 59개(27건)
- 무죄 7건, 징역 15건, 벌금 9건

표19. 2017.1.1 부터 9.13 사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

범죄명	사건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11(1)
아동복지법위반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5
장애인복지법위반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3
업무상과실치상	2
상해	2
살인	1
폭행	1
초중등교육법위반	1
미성년자의제강간	1
미성년자의강제주행	1
업무상과실치사	1
상습특수상해	1
상습특수협박	1
총포·도검·화약류등위반(위장판매)에관한특별법위반	1

27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 (2) 형사판결 분석

- 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16건 중 사망사건 3건 포함 (자살사해 후 자살시도 사건 1건 포함)

표20. 장애아동 학대 판결의 피고인, 피해아동연령, 학대 유형

피고인	교원	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사회복무요원	부모	지역복지관 강사	타인	시설동거인
	11명	10명	8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피해아동의 연령	0~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10인	3건	6건	8건	2건			
학대유형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학대		유기·방임	
	16건		5건		6건		3건	

28

01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 (2) 형사판결 분석

(6개의 주요사건 분석)

- ① 친모가 자폐성 발달장애 2급 아동(9세)을 살해한 사건(살해 후 자살 시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사건의 원인을 부모의 게으름, 무능력, 나약함 등에서 비롯한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 ② 유치원 보육교사가 자폐성장애 2급 아동(4세)을 학대한 사건(무죄): 교육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육계획에 따른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고, 악의나 괴롭힘 의도가 없어 고의를 단정할 수 없어 고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 ③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에게 일명 ‘동침’ 등 학대한 사건(6명 중 4명에게 무죄)
- ④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아동의 성기를 잡아당겨 학대한 사건(무죄): 피해아동의 진술의 오염과 신빙성 탄핵
- ⑤ 사립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지적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
- ⑥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1급 아동(13세)에 대해 출입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해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학대한 사건(무죄): 피해아동이 시위행동의 일종으로 돌발적으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

29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30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현행 법령

- 1) 기본권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2) 아동보호 및 복지 :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 학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1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현행 법령

- 차별금지,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날 권리, 원가정 양육의 원칙
-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및 보조인 선정: 필수적 선정으로 개정(아동학대처벌법, 2021. 3. 시행)
- 진술조력인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준용
- 장애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등 마련(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1. 6. 시행)
-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장애인복지법, 2022. 1. 시행)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2021. 6. 시행), 진술조력인 참여 규정 신설(2022. 1. 시행)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장애인학대행위자 상담 등 지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배제 특례(2022. 시행)

32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주요 정책

- 2019. 5.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 2021. 1. 및 2021. 8.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 2021. 12. "2022년 장애인보장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아동학대대응체계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정책 내용 부재
-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선, 가족양육 서비스 확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군구(아보전) 간 협조 등 정책의 방향만 제시될 뿐, 제시된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
- ◆ (아동특성 고려) 장애아동, 위기 청소년 등 아동 특성에 맞는 대응을 위해 관련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
- ① (장애아동) 장애아동 학대 조사 사례관리 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군구(아보전) 간 협조체계 구축하여 대응 전문성 강화

단계	기존	개선
신고접수	112 (아동학대신고)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학대신고) 에서 신고 접수, 정보 공유 미흡	신고 후 상호 통보하여 재신고·동일신고 여부 확인
조사	신고 접수기관별 학대 조사 (경찰·지자체/옹호기관)	상호 협조를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
사례판단·관리	신고 접수기관별 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 (아보전/옹호기관)	상호 인력 지원 (아동 전문가, 장애 전문가)
통계관리	기관별 통계 관리	매월 주기적 통계 공유

33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국회 의안 검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심)

• 아동복지법

장애아동 혹은 그 보호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더 쉽게 분리조치
 학대피해아동실태 확충
 시설 퇴소아동이 자립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장애인거주시설로 연계

• 아동학대처벌법

처벌 강화 관련: 공소시효 배제, 가중처벌
 피해장애아동이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권 배제

→ 과연,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인가?

34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국제인권규범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 12. 20. 대한민국 발효): 제2조(비차별), 제19조(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20조(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의 보호), 제23조(장애아동)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8. 5. 3. 대한민국 발효): 제7조(장애아동),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8호(2007), 9호(2007), 13호(2011)
-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2006)

35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국제인권규범

-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019)**

26. (중략)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차별이 합법이라는 점
- (d) 아동학대의 과소 보고
-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정책과 전략의 부재
-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 (h) 학대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36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국제인권규범

•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019)

27. (중략)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 실시
- (b)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
- (d)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 신고 지침 수립
-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수사 및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
-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해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 보장
- (h)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 할당

37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국제인권규범

•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019)

36. (중략)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
-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
- (c) 학교 기반시설과 체육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
-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

38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국제인권규범

• 대한민국 제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022)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시한다.

- 장애인을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일반 대중 및 특별히 장애인들의 인식 부족이 있고, 모든 환경, 특히 가정, 학교, 직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해 종합적인 전략의 부재
-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점과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및 관련 진정사항에 대한 정보 및 통계 데이터 가용성의 제한
- 심리사회적, 지적장애여성을 포함한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가능한 쉼터의 부족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 인식을 위한 종사자, 돌봄 제공자, 가족,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 대상 훈련이 충분치 못함
- 현존하는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여성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탈시설화 전략에 대한 느슨한 이행, 특히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지적, 심리사회적장애인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의 부족
-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39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국제인권규범

• 대한민국 제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02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시설 안팎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 및 시행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분리된 통계를 수집할 것
- 지원센터 및 응급쉼터를 포함하여 성 관련 폭력의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서비스가 접근 가능할 것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할 것
- 장애인의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폭력 피해 장애인들과의 더 나은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
-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 장애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견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생활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

40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 ① 공공 ·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대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의 웰빙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아동 보호나 돌봄에 책임이 있는 기관, 사업 및 시설이 주무관청이 설정한 적절한 직원수 및 숙련된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안전, 보건분야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입양특례법 제4조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1

02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원가정보(양육)의 원칙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16년 신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①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2009)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2019): 아동은 원가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으며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대안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배치보다는 가족적 환경에서 보호될 권리 강조

42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43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원가정보 보호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등

- 장애아동 또한 아동보호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아동보호의 기본원칙과 권리 보장 필요
- 아동보호체계: 시설 입소 등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 → 아동보호팀 사례 종결 처리
- 장애인학대대응체계: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 부재, 지침 등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시 아동 학대전담공무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상호 정보 공유 및 필요시 협조·지원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 내용 부재

44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원가정보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의 변화

2021	2022
-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로 연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등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려 - 아동복지법 이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시설 등으로 보호조치를 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부서로 <u>사례이관 후 시스템 종결 처리</u>	- 장애인 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되기 전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임시보호 가능 - 보호대상아동을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보호할 경우, 아동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함 - 해당 부서(장애인, 청소년 담당)에 아동의 기본정보 및 입소상황을 공문 발송하여 사례이관하며, 사례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 협조함

45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원가정보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또한 차별 없이 공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장되어야
-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학대 및 복지전달체계와의 협력: 장애의 정도에 따른 연속적 보호와 회복서비스 제공 필요 예) 일본: 장애아동 학대, 성인기까지 일관되고 연속적 대응하도록 설계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함께 장애아동, 장애아동 학대 및 보호에 관한 특화된 매뉴얼 마련, 공동교육 진행
-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배치
- 지역 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예) 장애아동 지원 전담인력 시도에 배치, 시군구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슈퍼바이저(Supervising)

46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원가정보 보호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

3) 장애아동의 원가정보 양육 원칙 보장을 위한 지원 (예방)

- 장애아동의 원가정보 양육 원칙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
- 원가정보 보리는 '최후'의 수단, 모든 시설은 '일시보호' 원칙
- 6세 미만 장애아동 활동지원 X (장애인활동지원법)
- 장애아동 양육을 포함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
- 원가정보 지원을 위한 방법: 상담, 관리, 교육, 코칭
- 지역사회에 마련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지원기관의 역할 적극 활용 필요
- 2021. 8. 보건복지부 발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형 보호 우선
- 가정위탁의 질 향상,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 할당
- (참고) 미국 가족사정대응체계, 가족지원학부모센터, 일본 장애아동가정의 지원을 통한 장애인학대 예방 정책의 바탕

47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장애아동이 시설로 보호조치된 경우 모니터링 제도화

- “국가는 돌봄, 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배치결정된 아동이 그들에 대한 처우 및 결정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 비장애아동에 비해, 시설보호조치 비율이 높음 (원가정보보호 비율이 낮음)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시 아동보호팀 사례종결의 문제
- 장애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은 특수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총원하고,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며, 정기적인 감시와 평가를 받고, 접근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진정 기제를 갖추어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호, para. 43.)

48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관계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제도화

- 장애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인 아동권리와 원칙, 장애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필요
- 관계종사자: 정책담당자, 판사, 변호사, 경찰, 교사, 의료계 종사자, 사회복지사, 대중매체 종사자 등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호)
- 장애아동 담당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집중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해당 과정의 이수를 자격취득의 필수조건으로 삼아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49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장애아동 학대 신고 및 수사·재판 절차

- 신고
 - 신고통로의 개선: 접근성 강화, 신고 접수기관 간(경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신고의무 강화 필요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제재,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비밀 보장 등)
 - 장애아동학대 인지·판별 제도와 방안 도입 고려 (예: 건강검진, 순회 상담교사)

• 장애아동의 참여권 보장

- 아동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아동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 아동이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의견 청취방법 아동친화적 방법으로 설계(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자료나 문서의 개발 필요)
- 훈련된 전문인력 배치 필요: 일련의 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진술분석관,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 보장
- 장애아동의 표명된 의견이 권한 있는 비중으로 고려,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 장애아동 진술의 신빙성

- 진술조력인, 국선피해자변호사의 총원 및 확보
- 진술 영상녹화 활성화

50

03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통계 관리

-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부재
- 장애아동 학대 통계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고, 통계의 수집 일원화하여 관리

• 예산 확보 (항목의 신설 혹은 증액)

- 장애유무 판별 시스템의 구축, 장애아동 전문성 확보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관계종사자 교육의 확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에 대한 관리·감독 내 실화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필요

- 보건복지부 예산: 2021년 본예산과 추경 대비 → 2022년 '아동·보육'에 대한 지출 소폭 증가

-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예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 중 아동보호전담요원 증원 (시군구별 업무부담 편중 및 겸임 배치 개선 필요)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예산: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포함, 특히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필요

-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예산: 유엔 권고사항을 고려한 검토 필요

51

마치며



아동 권리
관점과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우리 모두는
아동 권리를 실현하는
이행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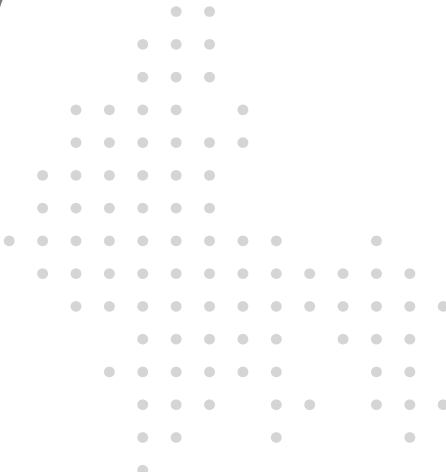
변화를
현실로
일구어내는 일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할 수 있다.”

- 아동 폭력에 관한 유엔보고서(2006) -

52





세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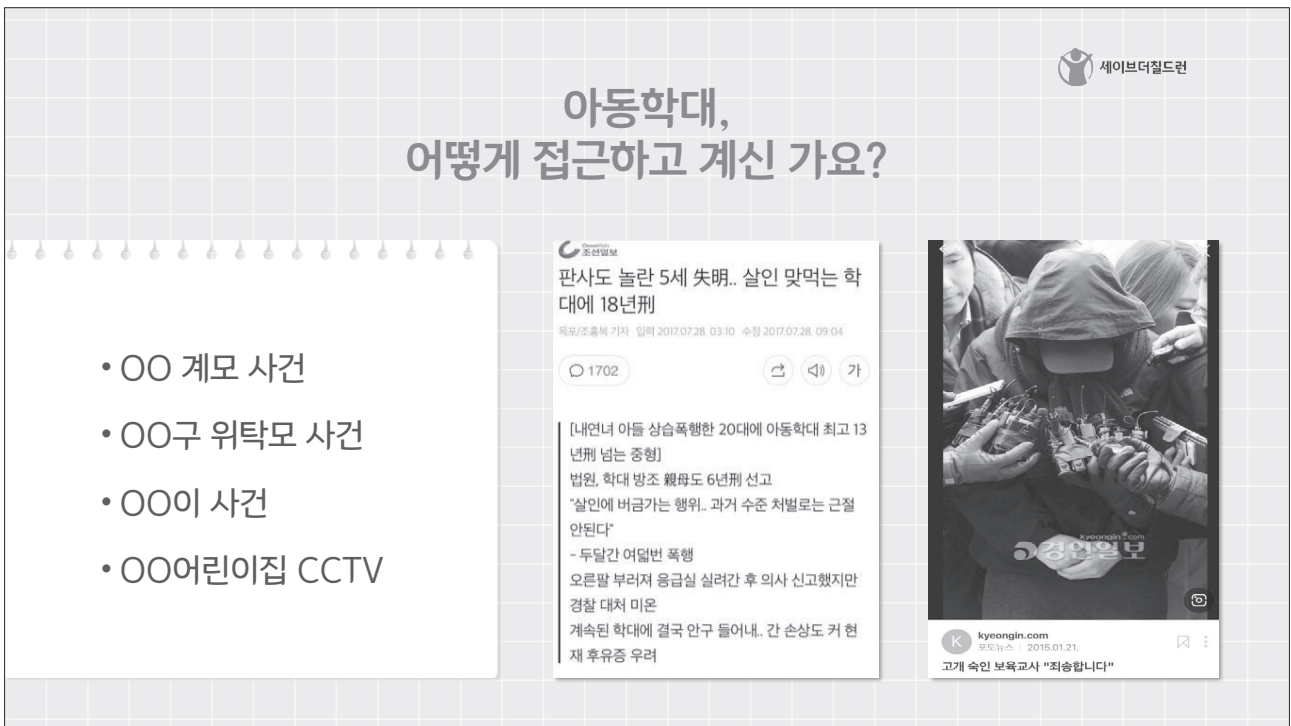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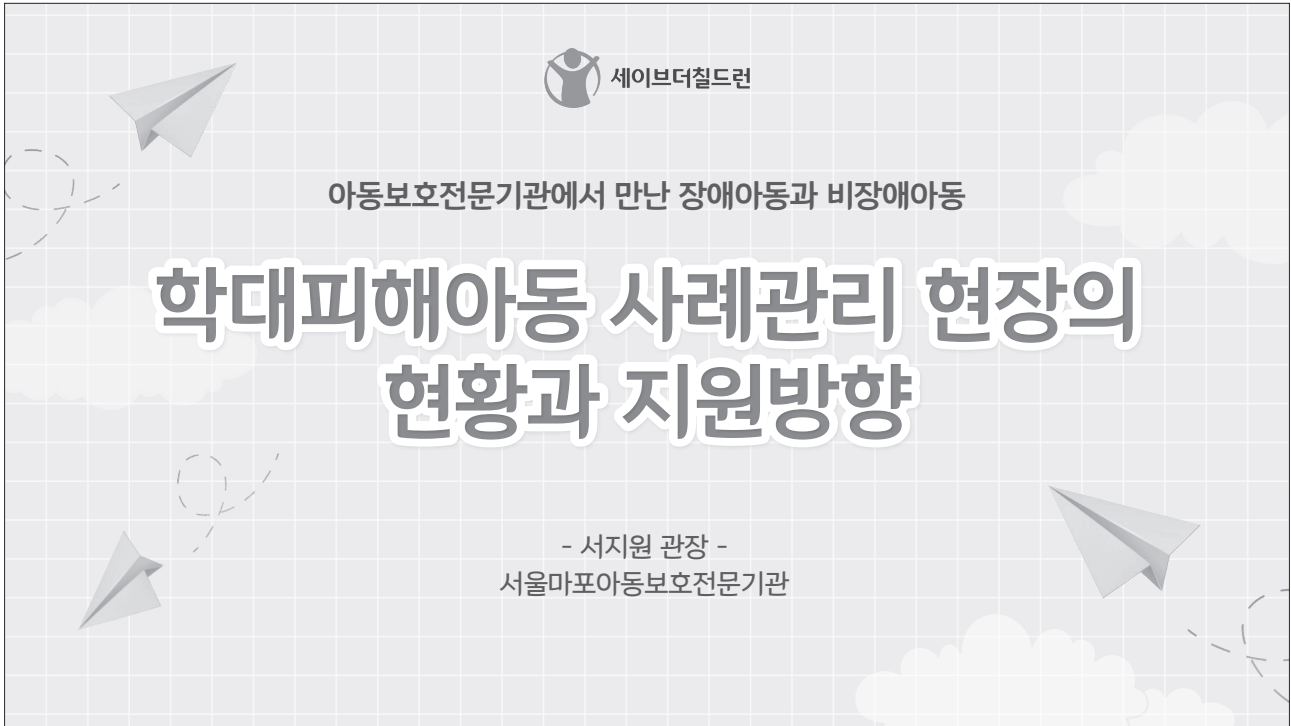
아동학대의 현장

발제 1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현장'의 현황과 지원 방향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만난 장애·비장애 아동

서지원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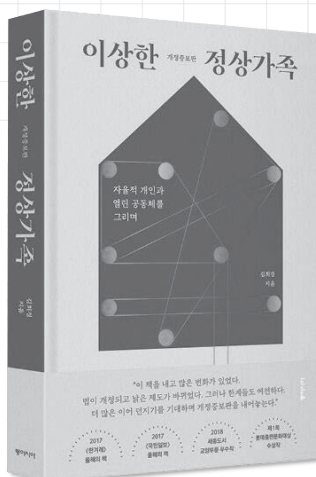


아동학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 아동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건
- 잔혹한 행위
- 악마 같은 가해자
- 아동에 대한 동정과 연민
- 가해자에 대한 맹렬한 비난



아동학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는지' 분노한다.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악마 같은 사람들이라고 치를 떤다. (중략) 그런데 체벌과 학대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그토록 멀고 서로 다른 것일까? - p.20

실제 가해자의 행동을 놓고 보아도 체벌과 학대의 거리는 멀지 않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죽이거나 해를 입힐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학대는 없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학대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인 폭력 이라기 보다 보통 사람들의 우발적인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치달은 결과라는 것이 그간 솔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 p.26

<이상한 정상 가족> 본문 중에서



아동학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만나는 아동학대 사례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

<사례 1>

만 12세의 여자 아동이 담임교사에게 친모의 잦은 음주로 인한 고민을 말하자 담임교사가 친모에게 연락하여 상담함.
이후 친모가 학교 한 아동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배신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머리를 손으로 세게 밀치며 아동의 다리를 '퍽' 소리가 나게 내려침. 이에 정서 학대 및 신체학대로 판단함.

<사례 2>

친모가 매일 지각하는 만15세 아동을 세게 흔들어 깨우자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짜증을 내며 친모에게 욕설을 함.
이를 들은 친부가 누워있는 아동의 다리를 발로 3~4회 걷어차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내 집에서 꺼져버려라'고 소리를 지름. 이에 정서 및 신체 학대로 판단함.



아동학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만나는 아동학대 사례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

<사례 3>

친부와 친모의 부부싸움 중, 친부가 친모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자 겁에 질린 아동이 112에 신고함.
조사 결과 아동은 발달장애(자폐성장애) 2급이었으며 친부모 모두 아동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부부갈등이 심했음.
친부모에 의한 다른 학대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정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정황이 확인되어 정서학대로 판단함.



아동학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언론에 보도되는 중대사건에 비해
훨씬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매우 복합적인 요인을 가짐.

아동학대는 ‘특수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두의 문제’



아동학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가족중심’의 개입이 필요

아동학대 행위자의 83.7%가 ‘부모’ / 발생 장소의 84.2%가 ‘가정 내’

- 학대피해로 인한 아동의 학대 후유증 회복
-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양육자의 양육기술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재학대 예방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관계회복, 가족의 역량강화가 필수적



아동학대 현황

2021년 아동학대 의심사례(신고) 52,083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

(단위 : 건, %)

아동학대 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37,605	13,945	533	52,083
(72.2)	(26.8)	(1.0)	(100.0)

자료출처: 2021년 아동학대주요통계(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

2021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37,605건 중, 사건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21,509건

<표 1-3-22> 학대행위자 상황

(단위 : 건)

아동학대 사례 건수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37,605	16,096

<표 1-3-24>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단위: 건, %)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37,605	5,718	15.2

자료출처: 2021년 아동학대주요통계(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

2021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37,605건 중, 아동이 원가정 보호된 사례는 31,804건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 보호조치 유형별

(단위: 건, %)

피해아동 상황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31,804	(84.6)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5,437	(14.5)
사망	44	(0.1)
기타	320	(0.9)
계	37,605	(100.0)

자료출처: 2021년 아동학대주요통계(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례관리

2021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37,605건 중,
학대행위자 상황(사건처리 여부)과 피해아동 상황(보호조치)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심층관리 사례, 일반관리 사례)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다양한 배경과 복잡한 문제를 가진 학대피해아동 가정

신체 건강 또는 정신건강 특징, 경제적 어려움, 이주배경 아동, 학업부진, 또래관계 어려움,
양육기술부족, 정서행동장애 또는 비행, 지지체계 또는 자원의 부족 등

각 가정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재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맞춤형 전문 서비스(사례관리) 제공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사례관리란?

아동과 학대행위자를 포함하여 아동의 '가정'에 개입

-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
- 학대 특성과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수
- 아동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가족역량강화

자료출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대상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피해아동,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 사례의 유형	• 심층관리사례 : 빈번한 접촉과 관심, 집중 서비스가 요구 됨. 주1회 가정방문 • 일반관리사례 : 최소 월1회 이상 가정 방문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절차	초기면접 - 사정 - 사례관리계획 수립 - 개입 - 사례점검 - 사례종결

자료출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특징

01

아동을 중심으로
행위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개입함.

02

아동이나 부모가
개입에 대해
비자발적이 거부적인
경우가 많음.

03

법적인 근거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개입함.

04

실천원칙

강점관점
(대상자의 변화는 결국
대상자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믿음)

가족중심실천
(원가정보호 상태에서
다양한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특징

01 아동과 행위자의 지속적인 저항과 거부	02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개입절차와 가족의 욕구의 충돌	03 비자발적 참여로 인한 강점관점 실천원칙 적용의 한계
04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관리하는 사례 수의 과중	05 지자체(아동보호팀)와 협력과정의 과도기적 단계	06 다양한 가정의 욕구와 특성으로 인해 상담원들의 교육훈련 필요성 증가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922명 대상 조사 결과)

1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확보 상담원 1인당 사례 수: 미국에서 제안하는 15사례의 최대 4배	02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법적 지위 확보	03 아동학대 사례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	--	---

자료출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아동학대사례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사례관리

1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확보

(상담원 1인당 사례 수: 미국에서 제안하는 15사례의 최대 4배)

2순위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법적 지위 확보

아동보호체계 보완, 제도적 차원의 개선 필요

- 상담원 인력 충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 상담원 처우 개선 및 아동보호체계 내 협업강화
- 장기적이고 전문적 관점에서의 상담원 교육훈련 실시
- 개입에 거부적인 가정에 대한 개입강화 방안 마련

아동학대 사례관리

3순위

아동학대 사례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 행위자를 포함한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 학대피해아동의 권리 인식과 안전한 성장을 돕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세이브더칠드런

자료출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각 기관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상담원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현실

 세이브더칠드런

143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

-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 아동과 가족의 개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 콘텐츠의 확산 및 상담원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의 보편적 적용

민간 영역의 전문성 강화와 공공 영역의 정책적 접근 필요



전문성에 기반한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사례

“아이를 때리지 않고 어떻게 키우란 말인가요?”
“우리 아이가 버릇없이 자라면 선생님이 책임 지실 건가요?”

행위자를 포함한 부모

아동이 발달 단계별 특징과 양육기술을 배우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세이브더칠드런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도담도담 부모 프로그램>
굿네이버스 GN 모듈



전문성에 기반한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사례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저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학대피해아동

스스로 아동권리를 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기

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



전문성에 기반한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사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지금 느껴지는 여러가지 감정들은 무엇인가요?”

학대피해아동

스스로 아동권리를 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기
 단, 장애와 관련한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기

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목표

아동의 안전, 가족의 회복과 역량강화

- 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양육자
-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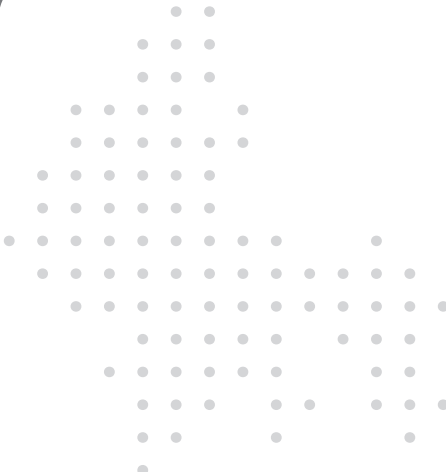
전문성을 갖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력 확보

+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현장에서의 보편적 활용



감사합니다 😊



세션 2

아동학대의 현장

발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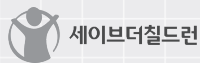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장'의 현황과 지원 방향
: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만난 장애 · 비장애 아동

황은희 |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장



학대피해아동(장애/비장애) 보호 현황 및 문제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장 황은희



학대피해아동쉼터(장애/비장애) 개요



설치 113개소('22. 10월 기준/ 남아48, 여아65) 23년 추가설치 예정 (단위 : 개소)

※ 출처 :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원시설 현황(2022년 10월31일 기준)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 숙식 지원에 더해 임상심리치료인력을 필수로 두어 학대 트라우마 치료에 중점 (대부분 비상근 프리랜서)

설치 기준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속사

- 방4개 이상(아동방 2, 직원방 1, 심리치료실 1), 화장실 2개 이상
- (인력) 기관당 6명 (원장 1, 보육사 4,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 * '21. 7월부터 보육사 1명 증원하여 기관당 6명
- (보호아동) 7인 이하

※ ('22.3월 기준) 종사자수: 575명 / 아동수 현황: 672명(개소당 6.8명)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보호·숙식 제공

-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지원 등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병원 치료 지원 등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학대피해아동쉼터(장애/비장애) 개요



설치 '22년 10월말 기준 : 서울, 부산, 경기 각2개소(남/여)설치 예산 확정으로 개원 준비 중 (단위 : 개소)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용쉼터 추가 설치 계획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6	2	2							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7.27.>

설치 기준 전용면적 100㎡이상

-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피시설, 그 밖의 입소장애아동의 거주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
- (인력) 기관당 6명(시설장 1, 생활지도원 등 5명)
- (보호아동) 4명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장애/비장애) 및 문제점



✓ 아동보호 현황 : 2020년 ~ 2022년(10월 31일 현재)

설치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108개소 (단위 : 명)

구분	총 보호아동 수(명)	장애아동 수(명)			비장애 아동 수(명)		
		합계	비율(%)	등록	미등록 (경계선 등)	합계	비율(%)
2020년	973	266	27.3	93	173	707	72.7
2021년	1,341	315	23.5	98	217	1,026	76.5
2022년 (10.31)	1,092	280	25.8	71	211	810	74.2
합계	3,406	861	25.3	262	601	2,543	74.7

※ 출처 :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자체 통계 현황(2022년 10월31일 기준)

✓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동시 보호의 문제점

1.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지능수준별, 연령별 욕구와 발달의 차이로 보호 및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2. 주의력결핍(ADHD), 품행장애의 이상행동으로 비장애 아동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치료 효과성 저해
3.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
4.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비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발생
5. 장애아동의 행동에 대한 모방 및 학습으로 비장애 아동의 퇴행 및 발달 부진
6. 입소아동들간에 장애아동에 대한 따돌림 발생으로 고립됨
7. 내부생활 규칙 적용이 어려움
8. 장애 아동의 돌발행동(외부활동 시 다른곳으로 가버리거나, 소리지르기, 폭력 등)에 따른 타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 증가

대안: 학대피해아동(장애/비장애) 전문적 보호를 위한 제안



✓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추가 설치

'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22년 10월말 현재 서울, 부산, 경기도에 각2개소(남/녀) 개원을
준비하고 있음.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빠르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지원하여야 함

입소대상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폭넓은 지침 마련 필요
- 장애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명확한 장애 진단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을 경우.

✓ 미등록 장애아동 및 정신과적 이상행동 아동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 학대피해아동쉼터 인력배치 기준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으로 장애에 대한 전문적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학대피해장애아동에게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장애아동입소 시 쉼터 정원 수 조정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돌봄의 공백 발생 사전 예방
- 비등록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아동을 관찰하고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보호자의 장애등록 거부 등
- 정신질환 증상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배치 기준 필요 : 과잉행동, 우울증, 공황장애, 품행장애, 주의력 결핍장애(ADHD)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메뉴얼의 필요성



✓ 사례: 학대피해아동(장애/비장애) 쉼터보호 사례 공유

사례 1(일반아동)

- 조영우(가명) / 11세(남) / 초등4학년
- 입소
2021년 5월 17일~현재
- 가정환경
친부, 친모, 아동 3인 가족 / 다문화가정
- 입소배경
아동이 분노조절을 못하고 친구들과 많이 싸우고 태권도학원에서 퇴소 조치 되는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혼을 내고 체벌을 하였음. 이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6차례 신고 되어 관리하고 있던 중, 2021년 4월 아동이 가출을 하고 친부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찾아 살펴보니 중아리에 체벌한 흔적이 있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로 분리되어 일시보호소를 경유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

- 주 호소문제
분노조절의 어려움, 왕용언어 발달지체, 이기적인 성향, 미디어 중독(매우심함)
- 아동의 특이사항
작은 체구와 얼굴로 3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편임. 언어구사력 좋음 (기복이심함). 편식이 매우 심함. 눈빛이 매우 적대적임. 늘 억울해 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망상이 있음. 조금만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발을 구르고 의자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간혹 칼을 들거나 찾아다님. 학교가기를 거부함(4개월). 씻는 것을 싫어해 일주일 동안 씻지 않고 지낸 기간도 있음. 가출을 자주 함. 핸드폰만 할 수 있으면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말 정도로 미디어에 중독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메뉴얼의 필요성



✓ 사례: 학대피해아동(장애/비장애) 쉼터보호 사례 공유

사례 1(일반아동)

- 조영우(가명) / 11세(남) / 초등4학년
- 아동의 강점
누구에게나 아이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 뚜렷함. 수학에 관심이 많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음. 자신이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 아동의 지역사외 자원
쉼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경찰, 학원(태권도, 수학학원), 교회, 무한돌봄 등
- 쉼터에서 제공하는 치료서비스
약물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집단놀이치료, 언어치료

- 1년6개월 보호 후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 변화

영우는 쉼터에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과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학교생활을 잘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도 참는 모습을 보이며 폭력적인(욕하기, 물건집어던지기)행동이 현저히 줄었음.

하지만 목욕할 때 물온도가 조절되지 않아서 목욕을 하기 싫다고 해서 보일러까지 바꿨지만 여전히 스스로 씻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은 씻고 있음

영우의 폭력적인 행동은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침.

매정을 갈구하여 사회복지사선생님들과 일대일 일 때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 못 하고 얕은 지식을 뽐내는 등 상황에 적절치 못한 모습을 자주 보여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움.

하지만 등교지도를 밀착해서 하지 않아도 요즘은 시간 되면 집에 오고 늦으면 연락을 하는 등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가출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2022년 7월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없었음.

- 양육자의 종합 소견

현재 영우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가족 복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영우는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장기시설로 전환하여 좀 더 보살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친부는 성실하지만 매우 바빠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을 보살피는데 어려움이 있고 친모는 아동과 언어적 소통이 어렵고 밤에 일을 나가며 아동을 무시위하여 혼자서는 아동을 케어하기 어렵다고 함. 하지만 영우가 갈 수 있는 장기 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영우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음. 학대유발요인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원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발현할 위험성이 있음. 영우가 집으로 돌아가면 지속적인이고 탄탄한 사례관리가 필요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메뉴얼의 필요성



✓ 사례: 학대피해아동(장애/비장애) 쉼터보호 사례 공유

사례 2(장애아동/심한지적장애)

- 이현우(가명) / 11세(남) / 초등4학년(특수학교)
- 입소
2019년 2월 28일 ~ 2021년 12월 21일(2년10개월)
- 가정환경
친부, 형(12세), 아동 3인 가족
- 입소배경
현우는 2017년 2월 아동이 주말만 지나면 지속적으로 멍이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따라하고,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에 노출이 되어 학교에서 신고함. 이미 5회이상 신고가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던 중 또 신고가 들어와 분리되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하였으나 두 형제가 함께 입소하다 보니 시너지가 생겨 너무나 많은 문제에 노출되고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쳐 다른 시설로 전원하면서 형은 집으로, 현우는 타시설로 전원하였음.

- 주 호소문제

심한지적장애와 ADHD를 함께 가지고 있음(친부가 동의하지 않아 약물복용 안하고 있음). 하루에 한 번이상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력적 성향을 보임. 에너지가 넘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함.

- 아동의 특이사항

현우는 심한 지적장애와 신체적으로는 근디스트로피, 구순구개열이 있으며 중 이염에 잘 걸림. 이로인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서울대학병원(아동청소년과), 삼성병원(이비인후과, 치과, 성형외과)을 내원하고 있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메뉴얼의 필요성



✓ 사례: 학대피해아동(장애/비장애) 쉼터보호 사례 공유

사례 2(장애아동/심한지적장애)

- **이현우(가명) / 11세(남) / 초등4학년(특수학교)**
- **아동의 강점**
에너지가 넘침. 밝고 명랑함.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 애교가 많음.
- **아동의 지역사회 자원**
쉼터, 지자체, 아동보전전문기관, 학교, 경찰, 학원, 무한돌봄,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친부의 적극성 등
- **쉼터에서 제공하는 치료서비스**
미술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아동의 변화

현우는 에너지가 넘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여 양육하는 선생님이 거의 일대일 붙어 있어야 하며 바깥 활동을 많이 해야 쉼터 내에서 잘 지냄.

방과 후에는 태권도를 다니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거의 매일 공원과 산책로에서 킥보드를 타거나 걷기, 공놀이 등으로 욕구를 충족해 주어야 함. 다행히 현우는 애교가 많고 춤추고 노래부르기를 좋아해서 하루에 1시간정도는 태블릿을 틀어 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활동하기를 좋아해서 집안 분위기가 산만하기도 하지만 다른 아동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함. 그리고 갑자기 왜요 왜요 하면서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횟수도 평소 초기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장애인시설로 전원을 준비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시점에는 일주일에 1회 정도로 현저히 줄었음.

현우는 늘 즐겁고 항상 웃고 밝은 모습이 장점이고 양육하는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힘들어 하지만 현우와 친해지고 나면 사랑 할 수 밖에 없는 아동임.

- 쉼터 양육자의 종합 소견

현우의 친부는 현우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와 세가족의 친밀도는 매우 강하지만 친부 또한 삶에 지치고 분노조절이 안되고, 적절한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마쳤지만 현재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증폭되어 친부가 감정조절을 못하고, 현우나 영에 대해 재학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음.

현우의 친부에게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기전 ADHD치료를 하고 약물복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의견을 물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음. 집에 돌아가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메뉴얼의 필요성



✓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양육하면서 어려움 점

- 영우는 비장애 아동이지만 심리적인 결핍이 심한아동이고 현우는 심한지적장애이면서 ADHD와 다행감이 심한 아동이다. 두 아동의 지적수준이나 심리적인 역동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영우는 조용히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보지 않을 때 보드게임(루미큐브, 스플렌서, 바둑, 블루마블...)을 하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현우는 지적수준이 5세 정도의 아동이다 보니 숫자나 한글을 익히지 못한 아동이라 지적수준이 필요한 보드게임 보다는 바깥 활동을 좋아한다. 주말같은 경우 바깥 활동을 하면 영우가 흥미를 갖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 보드게임을 하려고 하면 현우가 수행하기 어렵다 보니 영우가 선생님과 아니면 봉사자와 집중하면서 노는 것을 방해하고 그럼 현우도 할 수 있는 윗놀이를 하자고 해도 처음에는 잘 놀지만 집중력이 부족한 현우가 규칙을 안 지키며 방해를 하고 장난감도 영우는 포켓몬카드를 좋아하고 현우는 아직 로봇에 관심이 많아 공통점이 없음
- 주의력결핍(ADHD)인 현우, 심리적 결핍이 심하여 늘 억울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영우, 두 아이는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심하게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다 보니 종사자들의 소진이 매우 심하고 특히 현우가 불편감을 분노로 표현할 때 아동과 선생님들을 가리지 않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심한 경우 의사 등반이로 선생님 얼굴을 때리고 칼을 들고 다니는 행동, 현우의 문제행동 또한 심하여 온 집안의 물건을 훔쳐내고 던져서 늘어놓는 행동, 그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영우에게 배운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부분들은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는 비슷한 연령과 지능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한다면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정도는 빨라지고, 퇴행을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모방하는 문제는 많은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사를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아동들을 지도하고 치료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소진도 예방되어 숙련된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세션 2

아동학대의 현장

발제 3

장애 · 비장애 아동 콘텐츠 개발 배경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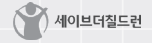
이수경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인식개선팀 팀장





CONTENTS		
01 콘텐츠 개발 의도	02 콘텐츠 및 교구재	03 확산 계획
▪ 프로그램 개발 배경 ▪ 프로그램 취지 및 목표	▪ 학대피해 비장애아동 권리교육 - 차시별 내용 - 교구재 구성 ▪ 학대피해 장애아동 권리교육 - 차시별 내용 - 교구재 구성	▪ 확산 방향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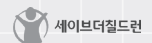
01 콘텐츠 개발 의도 프로그램 개발 배경



“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아동권리적인 양육의 실천과 체벌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1 콘텐츠 개발 의도 프로그램 개발 배경



아동권리의 위기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아동학대

- 아동학대는 아동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성인에 의한 폭력
- 아동의 건강한 발달, 참여, 생존의 권리까지 위협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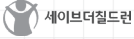
- 아동학대 판정 사례 증가 양상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
- 재학대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음
2019년 3,431건, 2020년 3,671건, 2021년 5,517건

아동학대 사건 및 가해자 처벌 강화에는 관심이 높지만
피해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체계는 부족함.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1 콘텐츠 개발 의도

프로그램 개발 배경



아동학대의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울 및 불안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Kaplow & Widom, 2007)

- 특히 자아존중감 형성에 악영향을 미침 (안영숙, 2014; 장용환, 송지혜, 2011)

+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은 인권친화적인 양육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됨

(현안나, 2016)

-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인권의식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달하는 기초(최아영, 이소민, 2019)
- 인권의식이 높은 청소년이 자아존중감도 높음 (박명금, 유은석,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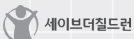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96%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1 콘텐츠 개발 의도

프로그램 취지 및 목표



01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아동의 눈높이 및 장애 유무에 따라 교구재를 구성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인권의식을 향상함으로써 건강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02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학대 현장의 종사자가 아동권리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1 콘텐츠 개발 의도

프로그램 취지 및 목표



세이브더칠드런

03



재학대에 대한 아동의 대응력 향상

아동 자신이 아동권리 침해 상황, 학대 예방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들이 자신을 지키고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재학대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04



전문적인 콘텐츠 제공

전문적인 콘텐츠 및 활용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현장 종사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1 콘텐츠 개발 의도

프로그램 취지 및 목표



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 비장애/장애아동이
아동권리를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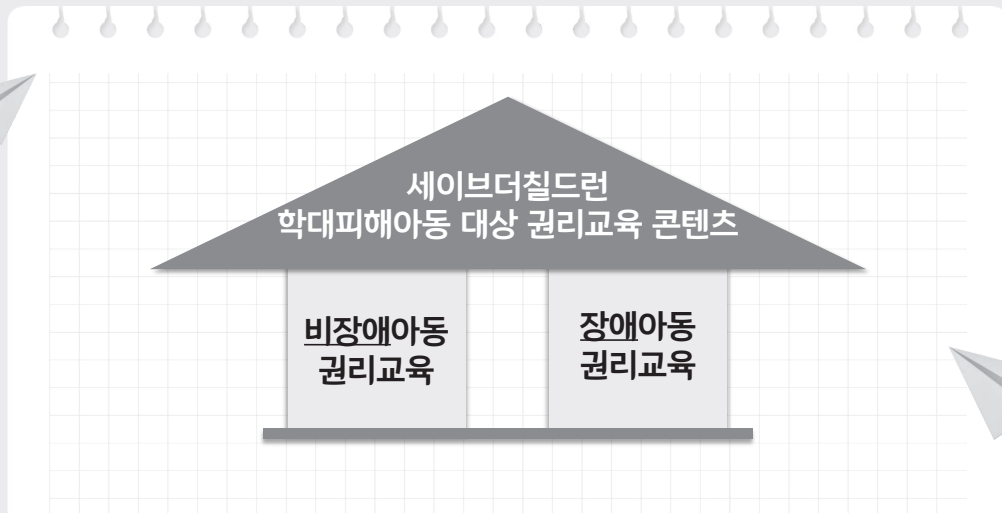


Save the Children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상담원들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 제공으로
상담원 전문성 강화 지원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1 콘텐츠 개발 의도 프로그램 취지 및 목표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비장애아동 권리교육



01 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 고학년

02 목표

- 아동권리의 주요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아동권리와 나를 연결한다.
- 자신에 대해 긍정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한다.
- 아동권리 침해(재학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비장애아동 권리교육



03 차시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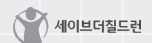
차시	차시명	주요 내용
1차시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아동권리의 주요 개념 이해
2차시	존중하고, 존중 받기	자아존중감 형성, 서로의 권리 존중
3차시	우리의 권리를 지켜요	아동권리 보호 실천, 재학대 예방

04 진행 시간

- 30~40분 (1개 차시 기준)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비장애아동 권리교육



01 교구재 - 전찬시 PPT와 교육용 가이드 (매뉴얼)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비장애아동 권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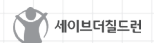
02 교구재 - 영상(아동권리 기본 개념, 소중한 나)



- 아동권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영상을 통해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영상
-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알려주면서 자아존중감을 접할 수 있는 영상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비장애아동 권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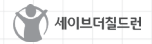
1차시 03 교구재 - UN아동권리협약 카드 1세트(24장)



-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구성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빈장애아동 권리교육



2차시 04 교구재 - 젠가 1세트(54개 블록)



요즘 관심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기 예) 나는 일기기를 못써. 하지만 노력하게 되면 주변 통령을 볼 수 있어서 좋아.	부모님 선생님께 칭찬받은 적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최근 스스로 해낸 경험이 있 다면 자랑해주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인가요? 왜 그런가요?

- 젠가 블록에 인쇄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문장을 읽고 답하며 자아존중감 및 타인존중을 기를 수 있음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빈장애아동 권리교육



3차시 05 교구재 - 나의 권리 지킴이 카드

나의 권리 지킴이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도움을 타인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어른은 누가 있나요? 	누군가 나를 학대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을 떠나게 된다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_____	_____	_____	_____

- 아동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성인 및 연락처를 적어 휴대할 수 있는 카드
- 재학대 등 위험 상황 시 카드의 연락처를 보고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권리교육



01 대상

- 의사소통이 가능한 발달장애 및 경계성 장애 초등학생 (8~13세 수준의 보편적 설계)

02 목표

- 아동권리의 주요 개념과 가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지한다.
- 학대 발생 시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여 안정감을 제공한다.
- 여러 가지 감정을 익히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
- 아동권리 침해(재학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권리교육



03 차시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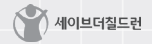
차시	차시명	주요 내용
1차시	권리는 무엇일까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차시	어른들도 배워야 해요	학대가 발생했을 때 자신과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그 과정이 회복의 시간임을 인지합니다.
3차시	나만의 행복 비법을 만들어봐요	여러 가지 감정을 배우고,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4차시	이럴 때는 꼭 말해요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알고, 믿을 만한 어른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04 진행 시간

- 30~40분 (1개 차시 기준)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권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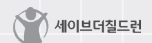
01 교구재 - 그림카드



- 발달장애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
- 직접 떠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그림카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권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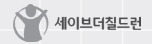


02 교구재 - 권리교육 도서 4종: 이야기-질문-그림-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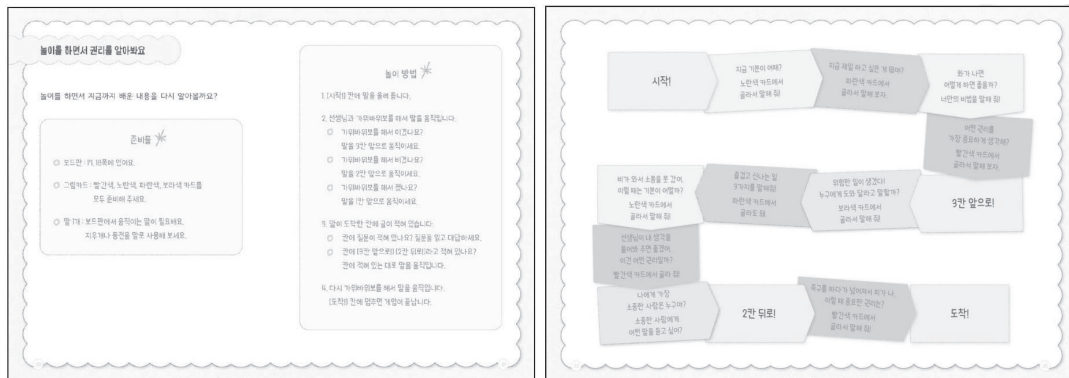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02 콘텐츠 및 교구재 확대피해 장애아동 권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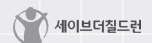


03 교구재 - 마무리 놀이: 보드게임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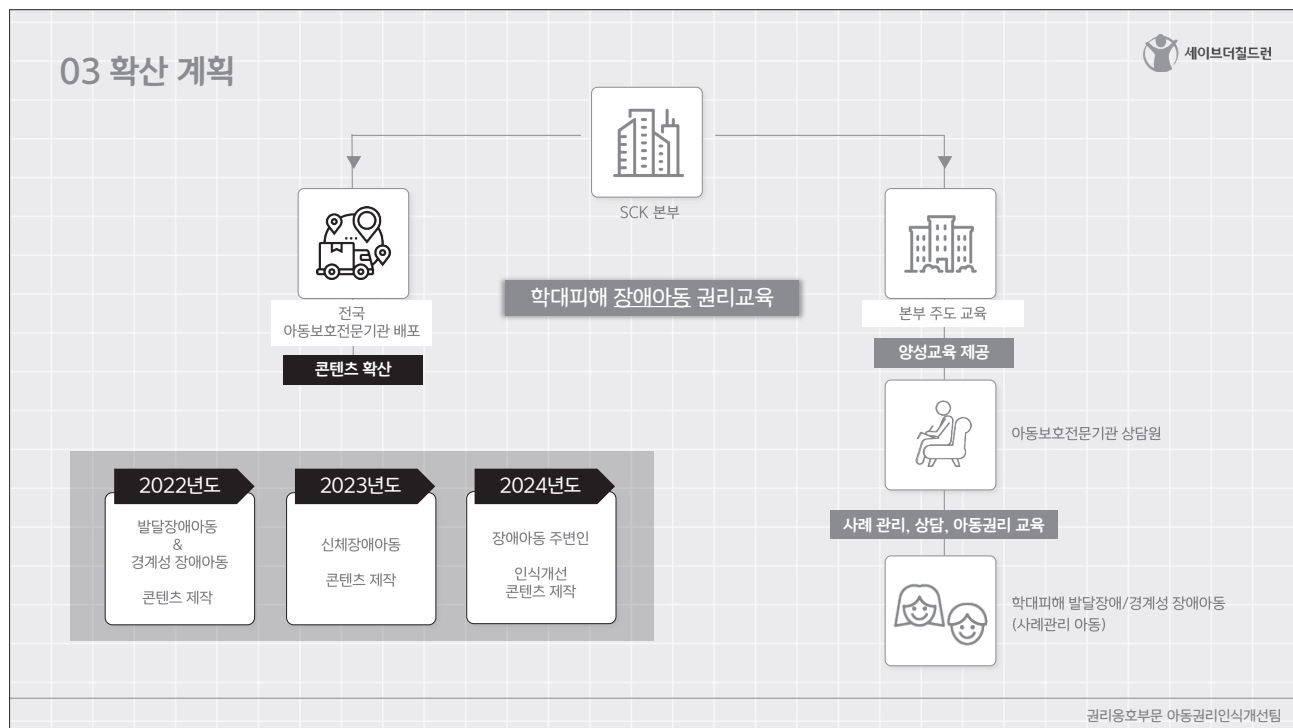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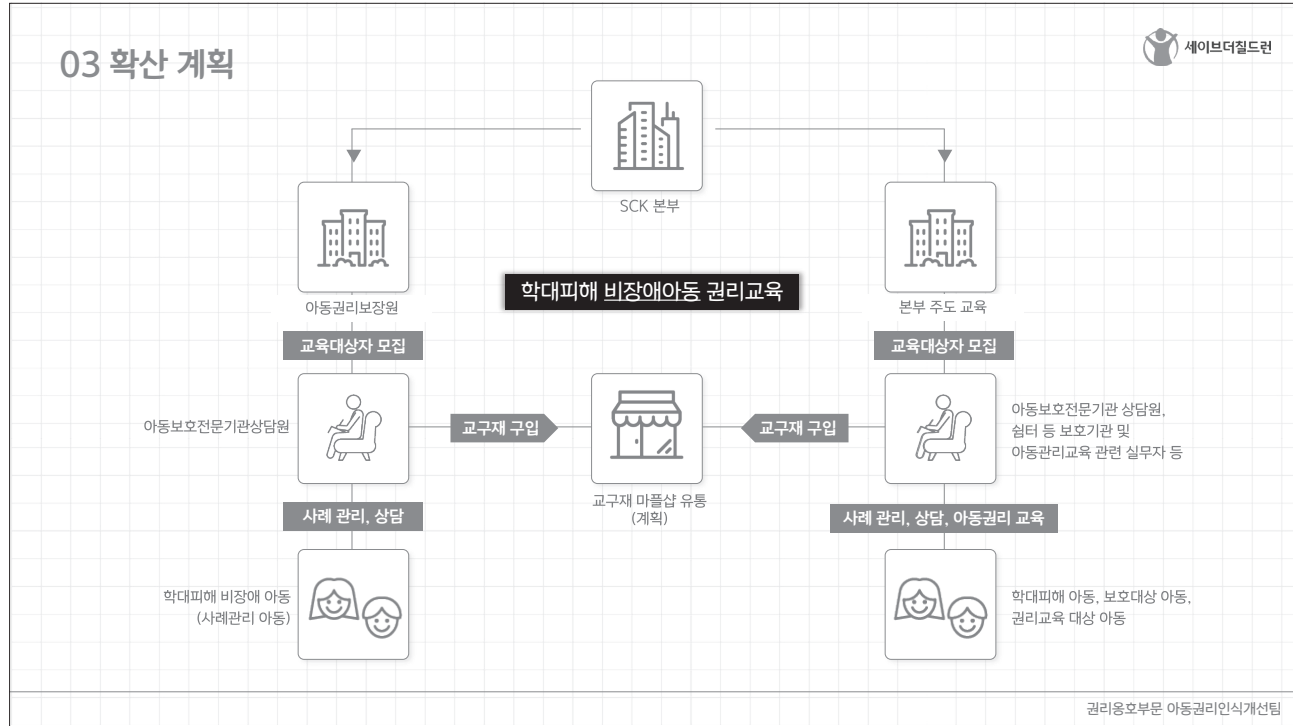
02 콘텐츠 및 교구재 확대피해 장애아동 권리교육



04 교구재 - 교육용 가이드(매뉴얼)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권리는 무엇일까?	어른들도 배워야 해요	나만의 행복 비밀을 만들어보자!	이럴 때는 꼭 말해요!
목표 ○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임을 이해한다. 배치 ○ 권리를 느끼고 있는 사람임을 이해한다. 활동 ○ 나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임을 이해한다. 평가 ○ 나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임을 이해한다.	목표 ○ 어른들도 배워야 해요. 배치 ○ 어른들도 배워야 해요. 활동 ○ 어른들도 배워야 해요. 평가 ○ 어른들도 배워야 해요.	목표 ○ 나만의 행복 비밀을 만들어보자! 배치 ○ 나만의 행복 비밀을 만들어보자! 활동 ○ 나만의 행복 비밀을 만들어보자! 평가 ○ 나만의 행복 비밀을 만들어보자!	목표 ○ 이럴 때는 꼭 말해요! 배치 ○ 이럴 때는 꼭 말해요! 활동 ○ 이럴 때는 꼭 말해요! 평가 ○ 이럴 때는 꼭 말해요!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크럼





THANK YOU!
감사합니다

권리옹호부문 아동권리인식개선팀

